

■ 판례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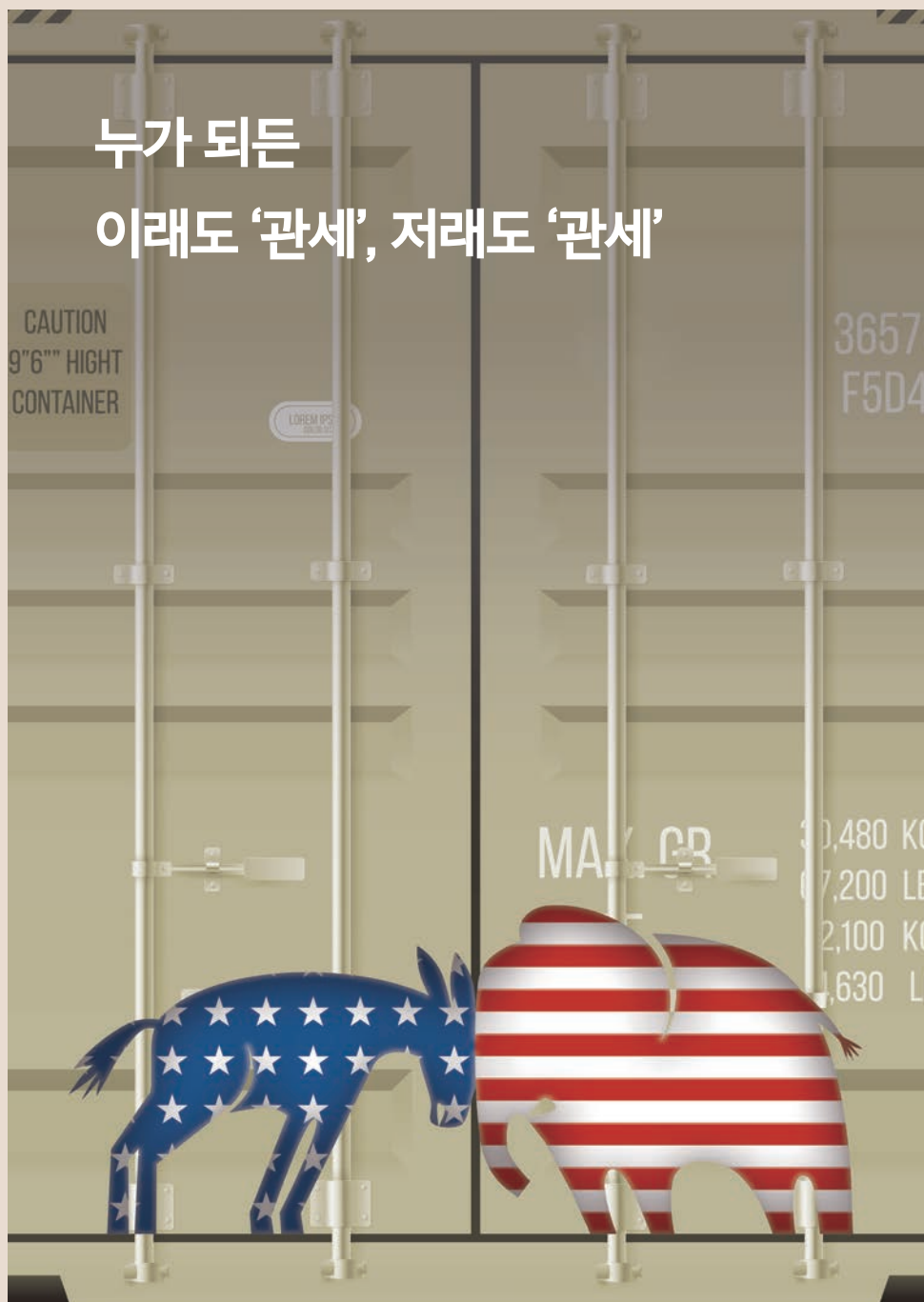
수입신고수리 후
품목번호 변경에 따른
FTA세율 배제의
위법성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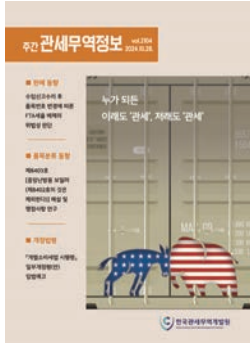
■ 품목분류 동향

제8403호
[중양난방용 보일러
(제8402호의 것은
제외한다)] 해설 및
쟁점사항 연구

■ 개정법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정기구독 신청

정기구독 회원이 되시면 매주 배송료 부담 없이 간행물을 받아볼 수 있고, CUSTRA 홈페이지(www.custra.com)를 통해서 주요 기사 및 법령 개정 소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기구독 기간 중에는 구독료가 인상되더라도 추가 비용 부담이 없습니다.

- 정기구독료 1년 360,000원(월 30,000원)년 48회 발행
- 정기구독 신청 방법
 - CUSTRA 홈페이지 : www.custra.com
 - 스마트스토어 : smartstore.naver.com/kctdi
 - 이메일 : know@kctdi.or.kr
 - 전화 : 02-3416-5112
- 무통장입금
 - 국민은행 096-01-0015-751
 - (한국관세무역개발원)

발행인 이찬기

편집인 김재현

총괄 권송미 vksm73@kctdi.or.kr

편집기획 이상혁 knight1229@kctdi.or.kr

취재 하구현 sendme95@kctdi.or.kr

김성은 ray1023@kctdi.or.kr

디자인 이승훈 lsh0910@kctdi.or.kr

마케팅 손민기 smk0110@kctdi.or.kr

함동규 hdk0929@kctdi.or.kr

인쇄 경성문화사

배포 (주)아림디엠

발행처 한국관세무역개발원
발행일 2024년 10월 28일(통권 제2104호)
ISSN 2799-7251
등록번호 서울 다07117(2005.5.20.)
주소 서울시 강서구 마곡중앙5로 22 6층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지식사업실
가격 7,500원
홈페이지 www.custra.com
SNS www.instagram.com/kctdi.official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CUSTRA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본지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는 저작물로서 무단 복제 및 배포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협의 또는 허락에 의한 경우에도 출처를 반드시 명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C O N T E N T S

이주의 초점

- 04** 누가 되든 이래도 '관세', 저래도 '관세'

06 Weekly News

16 현장 특파원

관세행정실무해설

- 24** 관세행정안내
FTA 원산지증명서 제출 면제 기준에 관한 문의
- 29** 질의응답사례
수입신고필증 교부

판례동향

- 32** 관세판례해설
수입신고 수리 후 품목번호 변경에 따른 FTA
세율 배제의 위법성 판단

품목분류동향

- 45** 품목분류해설
제8403호[중앙난방용 보일러(제8402호의
것은 제외한다)] 해설 및 쟁점사항 연구
- 55** 세번 바로잡기
편물제 장갑
- 57** 상식 밖의 상품학
소화기의 변신

최신개정법령

- 60** 입법예고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

누가 되든 이래도 '관세', 저래도 '관세'

美 대선 앞두고 韓 기업, '관세정책' 촉각

올해 최대 정치 이벤트인 美 대선이 1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글로벌 수출 및 공급망환경, 新산업 및 에너지 정책 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이번 대선에서 우리 기업들은 민주당과 공화당 중 어떤 후보가 승기를 잡든 양측의 관세정책에 가장 큰 관심을 나타냈다.

대선 이후 글로벌 경제 향방에 대해 우리 기업들은 보호무역주의가 확대되고 지정학적 리스크는 고조될 것으로 전망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봤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0월 22일 '美 대선 관련 정책이슈와 우리 기업의 과제 조사'를 통해 우리 기업들은 해리스 민주당 대선후보와 트럼프 공화당 대선후보가 각각 제시한 경제정책 공약 중 '관세 공약'에 가장 큰 관심을 보였다고 밝혔다.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을 등에 업고 수입 및 수출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미국의 무역 정책은 세계적으로 상품과 서비스에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4년간 세계 통상환경에 영향력을 끼칠 중요한 변곡점에서 기업들의 이목이 집중되는 것은 당연하다.

대한상회가 국내기업 30개社를 대상으로 해리스 민주당 대선후보와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각각 제시한 경제공약 중 우리 기업들이 가장 주목하는 공약을 조사한 결과 해리스 후보의 ▲전략적 표적관세 추진(17.4%), ▲동맹국 중심의 다자간 통상확대(17.3%)와 트럼프 후보의 ▲보편적·상호적 관세 확대(25.6%), ▲미국 우선주의 기반의 양자협상 강화(18.5%)로 꼽혔다.

해리스 후보는 전면적 관세부과에는 반대하되 중국産 철강 및 알루미늄 등에 전략적 표적(Strategic & Targeted) 관세정책을 추진해 온 바이든 정부의 정책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통상기조에 대해서도 동맹국과의 국제협력과 다자 협상(Multi-Lateral)을 중심으로 한 경제안보 협력 강화에 힘을 쏟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우리 기업들은 해리스 후보의 공약 중 '법인세 인상'(13.0%), '대중 디리스팅(De-Risking) 정책'(11.9%), '친환경·탈탄소 정책'(10.2%) 등에도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후보는 모든 수입품에 현재 평균 3%대인 미국의 보편적 관세를 최대 20%로 상향 부과하고, 중국産 수입품에 대해 60% 관세를, 멕시코 생산 중국 자동차에 최대 1,000% 관세를 물리겠다고 밝혔다. 통상정책에 대해서도 트럼프는 미국 우선주의를 기반으로 한 양자협상을 강화하고, 미국 내 생산시설을 확대하는 '온쇼어링(on-shoring)' 정책을 통해 자국 중심의 공급망을 구축해 무역적자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우리 기업들은 트럼프 후보의 공약 중 '미국 내 투자한 외국기업 혜택 축소'(13.9%), '對中 디커플링 정책'(12.7%), '법인세 인하'(8.2%) 등 정책 향방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하고 있었다. 트럼프는 "집권하게 되면 중국과 한국, 독일의 기업들이 미국의 각 지역으로 대 이동(exodus)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며 외국기업의 투자유치를 약속하면서도, 반도체법(CHIPS법), 인플레이

이션감축법(IRA) 등을 폐지 혹은 축소해 바이든 정부 시기에 미국에 투자한 외국기업에 대한 지원금 혜택을 줄여나가려 하고 있다.

중국과의 관계에서도 중국에 대한 최혜국 대우 철회, 전자제품·철강·의약품 등 중국産 필수재 화 수입 단계적 중단 등 강경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법인세는 15%로 인하할 것이라고 예고하며 해리스의 법인세 인상(28%) 공약과 차이를 보였다.

한편 대한상의는 우리 기업들이 전망하는 미국 대선 이후의 국제정세 및 경제환경에 대해서도 조사했다.

우선 무역환경에 대해서는 ‘관세장벽 증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될 것’(64.7%)으로 응답한 수치가 ‘국제협력으로 글로벌시장이 확대될 것’(35.3%)이라는 응답을 앞질렀다.

실제로 최근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는 심화되고 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기준 전 세계에서 한국에 대해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조치 등 수입규제 조치를 시행 중인 건수는 214건으로, 작년 동기(201건) 대비 13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러·우전쟁, 중동분쟁, 북핵 등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는 ‘고조될 것’(58.0%)으로 본 기업들이 ‘감소할 것’(42.0%)으로 본 기업들보다 많았고, 글로벌 금리인하 기조에 대해서는 ‘원달러 환율에 영향 미쳐 수출경쟁력 악화’(60.3%)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글로벌 유동성 확대’로 이어질 것’(39.7%)이라는 기대보다 높았다.

글로벌 에너지 정책환경에 대해서는 ‘탈탄소 재생에너지 사용압력 확대’(60.7%)를 전망하는 기업들이 ‘에너지 효율 향상 및 원전 활용 확대’(39.3%)를 내다보는 기업들보다 많았고, 향후 미국 경제에 대해서는 ‘경착륙 위험이 줄어들 것’(50.3%)이라는 응답과 ‘미국발 경기침체 위기가 고조될 것’(49.7%)이라는 응답이 비슷했다.

美 대선 결과에 따라 회사의 투자전략이나 경영방침이 변화될 가능성에 관한 질문에 ‘일부 개편이 가능하다’(36.3%)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개편할 여력이 없다’(33.7%)거나 ‘개편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28.0%)는 응답도 적지 않았다. ‘전면 개편이 가능하다’는 응답은 2.0%에 그쳤다.

우리 기업의 국제정세 변화 대응을 위한 정부의 지원과제 질문에 대해서는 ‘경제안보 강화를 통한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42.0%)에 대한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다. ‘공급망 다변화를 통한 통상이슈 대응 지원’(36.7%), ‘첨단산업 지원 확대를 통한 경쟁력 제고’(30.0%), ‘수출다변화를 위한 정책 수립’(28.7%), ‘FTA, IRA 등 기존 협정 및 제도 관련 대비태세 강화’(28.7%), ‘미국 내 현지투자기업 보호 강화’(18.3%), ‘글로벌 변화에 적극 대응 위한 민관 협력 강화’(17.0%) 등을 요구하는 의견이 뒤를 이었다.

대한상의 강석구 조사본부장은 “美 대선은 단순히 미국 내부의 변화를 넘어 글로벌 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정치 이벤트로, 그 결과에 따라 글로벌 수출 및 공급망 환경, 개별 산업에 미치는 영향, 신산업 및 에너지 정책 등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정부와 기업이 협력해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비하고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 하구현 기자 |

해외농업·산림자원 반입 명령 이행으로 발생하는 손실 보상길 열려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일부 개정안 10월 25일부터 시행

국내 농·축·임산물의 가격 급등과 공급부족 등에 따른 해외농업과 산림자원의 반입명령 이행으로 발생하는 손실 보상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또 농림분야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전담기관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해외농업산림법」)」 일부 개정안이 10월 25일 시행되고, 개정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시행령과 시행규칙도 함께 개정·시행된다고 밝혔다.

「해외농업산림법」 주요 개정 내용은 ▲비상시 반입 명령에 이행에 따른 사업자의 손실보상 근거 마련, ▲농림분야 국제협력(ODA) 사업 종합계획 수립 및 지원기관 지정, ▲농업기계·농업자재 등 관련 산업의 해외 진출 지원 등이다.

그동안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 사업자에게 비상시 정부의 반입 명령에 따를 의무는 있었지만, 반입 명령 이행으로 인한 사업자의 손실에 대한 보상 규정은 없었다. 이번 개정으로 반입 명령 이행으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 사업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반입가격과 국제거래가격의 차액, 반입명령 전에 체결한 계약의 해지로 발생한 비용 등 손실보상 기준과 절차도 구체화했다.

또 농림분야 국제협력(ODA)사업 종합계획 수립 및 지원기관 지정 등을 통해 체계적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했을 뿐만 아니라 농업·산림 투입재 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제농업협력사업에 관한 종합계획 및 국제산림협력사업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하고, 농업·산림협력사업의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지원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더욱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연관산업의 해외진출 지원 내용 ●

구분	개정 전	개정후
연관 산업 진출 지원	-	(신설)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과 관련된 연관 산업(농기계, 농자재 등 농업·산림 투입재 산업)의 해외진출 지원 근거 규정 신설
기타	-	(신설) 평상시 해외농업·산림자원의 국내 반입을 확대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근거 규정 신설 * 해당 해외농업·산림자원의 국내 자금 상황 등 고려 필요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과 관련된 농업기계·자재 등 농업투입재 산업 및 이에 준하는 산림 산업이 해외 진출 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평상시 해외농업·산림자원의 국내 반입을 확대할 수 있도록 행정 및 재정지원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 이를 통해 농식품부는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 기업들과 함께 해외 진출 시 큰 상승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김성은 기자 |

「수출식품등의 안전성 지원 절차 및 방법」 제정안 행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업계의 수출과 관련해 수입허용 요청 절차, 수출업소 등록, 기술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수출식품등의 안전성 지원 절차 및 방법」 제정안을 10월 24일 행정예고하고 11월 13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전했다.

제정안에는 식약처장이 수출상대국 정부를 대상으로 수입허용 요청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해당 사항을 관계부처에 통보할 수 있게 하고(제3조) 수출상대국 정부의 현지실사 대응지원에 대한 세부사항(제4조)을 정했다.

또한 수출상대국과 수출위생요건 체결 및 변경 절차(제5조), 수출업소 등록 지원 및 등록정보 변경 지원 절차(제6조, 제7조), 수출식품 등에 대한 수출검사, 수출위생증명서 발급, 봉인에 관한 세부사항(제8조, 제9조), 수출업소 기술지원과 수출상대국 기준에 부적합 시 원인 조사 및 개선 조치에 대한 방법과 절차(제10조, 제11조), 수출 안전정보 제공, 교육, 기술지원, 자문 등 세부사항(제12조, 제13조)을 정했다.

식약처는 수출상대국 정부에 수출업소 등록을 요청해 완료될 때까지 지원하고, 매년 수출업소에 대한 기술지원 계획을 수립해 업체별 맞춤형 수출지원을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수출상대국의 식품안전 규제 정보를 영업자와 관계기관에 제공하고 영업자 대상 수출교육 과정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관계기관·전문가·수출업체 등이 참여하는 ‘수출지원 협의체’를 운영해 영업자를 지원한다.

제정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할랄인증 의무화” 발표한 인니, 수입식품은 최대 2년 유예

당초 10월 18일 시행하기로 했던 인도네시아의 할랄인증 의무화가 최대 2년 유예돼 우리 기업들이 할랄 시장을 공략할 시간을 벌게 됐다.

10월 18일 할랄인증청(BPJPH)의 무함마드 아킬 이르함 청장은 자카르타에서 “인도네시아 국내 소기업 및 영세기업의 경우 할랄인증을 위한 허가와 인증 절차를 2026년 10월 17일까지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해외에서 수입되는 식음료, 도축 서비스 및 도축 제품에 대한 할랄인증 의무화 시점은 BPJPH와 해외 할랄인증기관 간 MRA 협력을 완료하고 늦어도 2026년 10월 17일까지 종교부 장관에 의해 결정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자카르타지사는 “영세기업과 수입식품에 대해 최장 2년 간의 유예기간을 부여한 것은 할랄인증 의무화를 전면 시행하기에는 제반 여건이 아직 갖춰지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이번 인도네시아정부 결정으로 우리 기업은 할랄인증의 무화에 대응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확보하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할랄인증에 대비해 인증 취득을 지원하는 한편, 인도네시아 수출 상황 모니터링, 수출기업 애로사항 해소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 김성은 기자 |

간소한 통관절차 악용 등 불법 해외 직구 '608억 원' 적발

관세청, 블랙프라이데이·광군제 기간 특별단속 시행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해외 직구를 통한 불법 수입액이 60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이 올해 9월까지 단속한 해외 직구 악용 사건은 143건에 608억 원으로 이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7건, 68억 원이 증가한 수치다. 올해 자가사용을 가장한 상용품 밀수입 등 관세사범이 110건에 530억 원, 지식재산권침해 사범이 4건에 19억 원, 불법 식·의약품 밀수입 등 보건사범이 11건에 58억 원, 마약사범이 18건에 1억 원으로 나타났다. 올해 1~9월 기준 단속 관세사범은 전년 동기 대비 24% 증가했으며 단속 금액은 78% 증가했다. 보건사범은 전년 동기 대비 15% 감소한 11건 적발됐지만, 단속 금액은 58억 원으로 41% 증가했다. 이에 대해 관세청 관계자는 “미화 150달러(미국의 경우 200달러) 이하의 자가사용으로 인정되는 소액 해외직구 물품은 수입신고가 생략되고 간소한 통관절차를 거치는 제도를 악용한 것”이라며, “관세청 단속 후 검찰에 송치된 사건을 발표한 것으로 통관과정에서 적발된 것은 제외됐다”라고 설명했다.

올해 3월 관세청은 SNS 등 온라인에서 판매할 시가 40억 원 상당의 주류를 가족과 지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이용해 개인이 반입하는 것처럼 신고하는 수법으로 관세·주세 등 세금 13억 원 상당을 포탈한 주류 수입업자를, 8월에는 태국産 식품, 화장품 등 시가 15억 원 상당의 3만 여점을 지인 명의를 이용해 다수의 주소지로 분산하는 등 불법 수입해 국내 유통한 태국 식품 판매점 운영자를 검거했다.

이에 관세청은 국민건강 위해물품, 지재권침해 물품 등을 밀수하는 불법 행위를 차단하고자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와 중국의 광군제 등 대규모 할인행사가 집중되는 10월 28일(월)부터 11월 29일(금)까지 5주간 해외 직구 특별 단속 기간을 운영한다. 불법 해외 직구 단속 품목과 분야를 선정하고 정보 분석 및 기획단속을 강화하며, 국내·외 전자상거래업체와 협업체 유해 식·의약품, 지재권침해 의심 물품 등 불법·부정 수입물품의 온라인 유통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도 실시하고 불법 판매자와 판매 게시글에 대한 사용정지, 삭제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대상 품목은 ▲식·의약·화장품, ▲가방·신발·의류등 잡화, ▲전기·전자제품, ▲운동·레저용품 등이다. 주요 단속 분야는 자가소비를 가장한 ▲목록통관 밀수입, ▲수입요건 회피 부정수입, ▲품명 위장 위조 상품 밀수입 등이다. 특히 이번 단속 기간에는 그동안 해외 직구 신고 건 중 지재권 침해 의심 사유로 통관보류된 건에 대해 정보를 분석하고 해외 직구를 악용한 지재권 침해 물품 밀수 혐의자를 선별해 조사할 예정이다.

관세청 한민 조사국장은 해외 직구에 유의해야 할 사례로 판매 정보에 'SA급, 정품로스, 미러' 등 짝퉁 관련 은어가 사용되거나 정품 대비 가격이 현저히 낮아 위조품이 의심되는 경우, 출처나 유통기한이 불분명한 식·의약품의 경우를 예로 들며, 이를 발견하면 관세청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 김성은 기자 |

정부·6개 정책금융기관 손잡고 기업 금융 애로 종합 지원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 '범부처 수출금융 협의체(Fin-eX)' 발족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을 중심으로 수출금융을 제공하는 6개 정책금융기관이 함께하는 수출금융협의체가 출범했다. 이에 따라 기관별로 다원화된 수출금융 지원으로 정책 활용이 어려웠던 수출기업의 애로가 해소될 전망이다.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은 10월 23일 수출금융을 제공하는 관련 부처와 함께 '수출금융 협의체(Fin-eX) 킷오프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수출금융 협의체는 수출금융 지원 현황과 기업의 금융 애로를 종합적으로 파악해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수출금융 지원 정책을 발굴하고 제공하기 위해 출범했다.

그동안 정부가 역대 최대 수출금융 공급을 바탕으로 수출실적 확대를 적극 지원 중이나 수출금융 지원 프로그램이 기관별로 다원화돼 있어 수출기업들이 지원정책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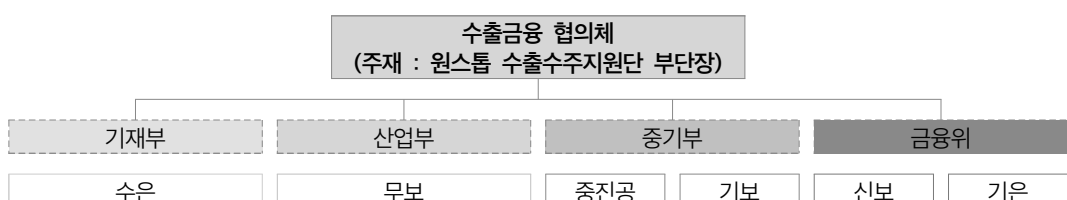
협의체는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을 중심으로 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IBK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의 6개 정책금융기관과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로 구성됐다.

정부는 협의체를 통해 수출시장 동향과 기관별 수출금융 지원 실적을 분기마다 점검하는 한편 정부와 각 기관이 현장방문·기업상담 등을 통해 수렴한 현장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지원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국을 방문해 기관별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직접 소개하고 맞춤형 금융상담을 제공하는 등 기업과 적극 소통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출금융 지원정책을 진단하고 개선점을 검토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김범석 1차관 겸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장은 “역대 최대 수출금융 공급에 따라 정부 지원에 대한 기업의 인식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언급하면서도 “기업의 금융애로가 지속되는 점을 고려해 수출금융 지원의 양적 확대와 더불어 운영·관리의 질적 향상이 이뤄지고 있는지 짚어봐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10월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2.9% 감소한 상황으로 올해 역대 최대 수출 달성을 위해서는 수출금융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소외된 기업이 없는지 면밀히 살피는 등 정책에 대한 현장 체감도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하구현 기자 |

● 수출금융 협의체 구성(안) ●



韓·中 해사안전정책회의의 재개... 양국 운항 국적선 안전확보에 한뜻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중단됐던 韓·中 해사안전정책회의가 5년만에 개최돼 국제여객선 합동 점검 등 양국 운항 국적선 안전확보 및 협력을 증진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10월 22일 중국 교통운수부와 '제20차 한중 해사안전정책회의'를 개최하고 양국 간 항만국통제 상호 협력 등 기본 의제뿐만 아니라 전기차 해상운송 안전성 확보 등 신규 의제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1999년부터 매년 해사안전정책회의를 개최해 양국 선박의 안전확보 등 해사안전 분야 관심 현안을 논의해 오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중단된 후 5년만에 개최됐다.

이번 회의를 통해 양국은 그동안 중단됐던 항만국통제관 교환근무와 韓·中 운항 국제여객선의 합동점검을 재개하기로 했다.

또 해상으로 운송되는 전기차의 안전성 확보 안전에 대해서도 양국정책, 기술개발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향후 관련 국제기준 마련에 있어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해양디지털 통신 및 항로표지 분야에 대해서도 상호협력 확대를 위한 인식을 같이하고 이를 구체화하기로 합의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코로나19로 인해 5년만에 개최된 이번 회의는 해사안전 분야에서 韓·中 양국 간 지속적인 협력의 필요성을 확인한 소중한 시간"이라며, "앞으로도 정부는 주요국가와의 양자협의를 강화해 선박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11월, 일본 진출 수출·입 기업 대상 지식재산권 교육 진행

일본에 진출한 기업들의 지식재산에 대한 준법의식과 활용 역량을 높이기 위한 온라인 교육이 개최된다.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와 함께 韓·日 각국에 진출했거나 진출 예정인 기업들을 대상으로 '韓·日 상호 진출·입 기업 대상 지식재산권 교육과정'을 온라인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식재산권 교육 과정은 해외진출 수출기업들의 지식재산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실시되며 참여국 지식재산 관련 기관에서 교육을 담당한다.

이번 韓·日 교육 중 일본 기업 대상 교육은 10월 25일 개최됐으며, 한국 기업 대상 교육은 11월 27일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교육은 지식재산권 개관, 韓·日 지식재산권 제도 동향, 지식재산권 활용 침해 위반 사례 등의 주제로 진행될 계획이다.

한국 기업 대상 교육 참가자는 해외지식재산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줌(Zoom) 링크를 통해 온라인으로 실시간 수업을 들을 수 있다.

특허청은 이번 교육과정을 통해 우리 수출기업들이 진출국의 법과 제도를 숙지해 위법행위를 최소화하고, 지적권 침해 등에 따른 손해를 예방해 성공적인 기업 활동을 펼칠 수 있기를 기대했다.

교육과정과 관련 자세한 내용은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국제교육과(042-604-4310)로 문의하면 된다.

| 하구현 기자 |

비만약 '위고비' 해외 직구·온라인 불법 판매 막는다

식약처, 온라인 쇼핑몰 대상 비만치료제 등을 금칙어로 설정

‘꿈의 비만약’으로 불리는 위고비가 최근 국내에 출시된 이후 품귀 현상을 빚으며 온라인 커뮤니티, SNS 등을 통한 불법 거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10월 22일 관세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고비를 비롯해 GLP-1(글루카곤 유사 펩티드-1) 계열 비만치료제의 해외 직접구매를 차단하는 한편 온라인 불법 판매·광고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경고했다.

위고비의 주요 성분은 당뇨병 치료제로 개발된 약물 ‘세마글루타이드’다. 식욕을 억제하고 포만감을 지속시키는 특성을 활용해 비만치료제로 상용화된 것이다. 대표적인 비만치료제 삭센다는 매일 투여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지만, 위고비는 투여 빈도가 주 1회다.

식약처에 따르면 위고비와 같은 GLP-1 계열 비만치료제는 포도당 의존적인 인슐린 분비 증가 및 글루카곤 분비 저해, 허기 지연 및 체중 감소 효과가 있다. 국내에선 초기 체질량지수(BMI) 30kg/m² 이상인 성인 비만 환자 또는 BMI 27kg/m² 이상 30kg/m² 미만이면서 고혈압 등 1개 이상의 체중 관련 동반 질환(이상혈당증 등)이 있는 성인 비만 환자에게 처방할 수 있도록 전문의약품으로 허가 받았다.

하지만 현재 비대면 진료 앱을 통해서도 손쉽게 위고비를 처방 받을 수 있어 오남용 가능성이 불거지고 있다.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키·체중 확인 없이 위고비를 처방 받았다는 후기가 올라오고 해외 직구를 했다는 이야기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대한비만학회는 10월 23일 성명을 통해 “비만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돼 가고 있는 시점에서 위고비 출시는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라며, “기존에 출시된 GLP-1 계열 삭센다가 미용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불법적으로 온라인에서 거래되기도 했다”고 언급하고 항비만약물의 오남용을 줄이기 위해 불법적인 유통을 철저히 단속하고 부작용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10월 15일 위고비가 국내에 출시된 이후 21일까지 위반 게시물 12건이 적발·조처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주요 온라인 쇼핑몰 등을 대상으로 비만치료제 등을 금칙어로 설정한 뒤 자율 모니터링을 하도록 협조 요청했다. 또한 온라인상 불법 판매를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게시물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있다. 식약처는 한 달간 온라인 판매·광고 행위를 집중 단속하겠다는 방침이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과 부작용·이상 사례를 모니터링하고 신속 대응반을 구성해 운영한다.

식약처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비만치료제는 절대로 구매하거나 투여하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 또한 해외 직구는 제조·유통 경로가 명확하지 않아 의약품 진위를 확인하기 어렵고, 불법 위조품인 경우 위해성분이 있을 수 있어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고 오남용의 우려가 있어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 김성은 기자 |

유류세 한시적 인하 2개월 연장, 인하율은 축소

연말까지 휘발유 △15%,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부탄 △23% 인하

올해 10월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가 12월 31일까지 2개월 연장되고 기존 대비 ℓ당 가격은 휘발유 42원, 경유 41원 및 액화석유가스(LPG)부탄 14원이 인상된다.

기획재정부는 10월 23일 유류세 한시적 인하를 2개월 연장한다는 소식을 전하며 최근 유가 및 물가동향,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 폭은 줄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휘발유 인하율은 기존 △20%에서 △15%로,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부탄에 대한 인하율은 기존 △30%에서 △23%로 각각 조정된다.

기재부는 유류세 인하 연장을 위해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10월 23일에서 24일 입법예고 했으며 관계부처 협의 및 국무회의 등을 거쳐 1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 유류세 인하기간 및 인하율 ●

(단위 : 원/ℓ)

유종	인하 전 탄력 세율	2021.11.12. ~ 2022.4.30.	2022.5.1. ~ 6.30.	2022.7.1. ~ 12.31.	2023.1.1. ~ 2024.6.30.	2024.7.1. ~ 10.31.	2024.11.1. ~ 12.31.
		△20%	△30%	△37%	휘발유△25% 경유△37% 부탄△37%	휘발유△20% 경유△30% 부탄△30%	휘발유△15% 경유△23% 부탄△23%
휘발유	820	656(△164)	573(△247)	516(△304)	615(△205)	656(△164)	698(△122)
경유	581	465(△116)	407(△174)	369(△212)	369(△212)	407(△174)	448(△133)
액화석유 가스 (LPG)부탄	203	163(△40)	142(△61)	130(△73)	130(△73)	142(△61)	156(△47)

※ ()는 인하 전 세율 대비 인하 폭

한편 기재부는 휘발유,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부탄에 대한 가격 인상을 이용한 매점매석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10월 23일 시행하고 단속하기로 했다.

고시 시행으로 석유정제업자 등에 대해 10월 한 달간 한시적으로 유류 반출량이 휘발유·경유는 전년 동기 대비 115%, 액화석유가스(LPG)부탄은 전년 동기 대비 120%로 제한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 업체에 과다 반출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고시를 위반할 경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정명령,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등 조치를 취한다.

매점매석 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업통상자원부·국세청·관세청 등과 협업체 매점매석 행위를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산업부·한국석유관리원·한국소비자원 및 각 시·도에서 2025년 1월 31일까지 매점매석 행위 등에 대한 신고 접수를 받기로 했다.

| 하구현 기자 |

美·中 무역갈등에도 반도체 글로벌 공급망 중심은 ‘中’

대한상의, 반도체 공급망 재편을 국내 생태계 강화 기회로 삼아야

美·中 무역갈등 이후에도 중국이 여전히 반도체 제조 공급망의 허브 기능을 지속하고 있어 반도체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0월 22일 ‘반도체 5대 강국의 수출입 결합도 분석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미국을 제외한 반도체 5대 강국 간 무역 상호의존도가 여전히 높아 미국의 우방국 중심 공급망 재편이 빠른 시일 내에 이뤄지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반도체 5대 강국 간 무역의 상호 보완성 정도를 중국의 수출입 결합도를 통해 분석한 결과,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와의 수출입 결합도가 여전히 높았다.

수출입 결합도는 양국 간 무역 연계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중국의 對韓 수출 결합도는 중국의 수출 중 한국 수출 비중을 전 세계 수입 중 한국의 비중을 나눈 값이다. 이 수치가 1보다 크면 양국의 무역관계가 상호보완적이며 1보다 작으면 무역 보완성이 떨어진다고 본다.

수출입 결합도 분석 결과 2022년 기준 중국은 한국과의 메모리 반도체 수출 결합도가 2.94로 높게 나타났고, 대만과의 메모리 반도체 수출 결합도 역시 1.52로 높은 수준을 유지해 보완적으로 나타났다. 수입 측면에서도 2022년 중국의 수입 결합도가 메모리 및 시스템 반도체 모두 한국(메모리 2.28, 시스템 2.12), 대만(메모리 1.50, 시스템 1.29), 일본(메모리 1.44, 시스템 2.05)과 높은 것으로 나타나 보완적인 관계를 갖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를 통해 보고서는 중국이 여전히 글로벌 반도체 제조 공급망 허브로서 기능하고 있고, 메모리 반도체는 한국과, 시스템 반도체는 대만과 긴밀한 생산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형곤 선임연구위원은 “중국이 범용 반도체 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을 지속적으로 높여가고 있고, 반도체 수요 시장으로서의 위상 역시 당분간은 유지할 것으로 보여 한국은 중국과의 협력 관계를 잘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AI 등 첨단 반도체 기술 부문에서 미국의 우방국 중심 공급망 구축에 협력해 나가되, 범용 반도체 부문에서는 중국과의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美·中 무역갈등 이후 반도체 부문 공급망 재편을 국내 생태계 강화의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먼저 메모리 반도체뿐만 아니라 시스템 반도체 제조 분야까지 경쟁력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정부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전력공급 등 인프라를 확대하고, 대규모 생산설비가 필요하지 않아 스타트업 및 벤처기업들이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는 반도체 칩 설계 분야는 국내 스타트업 및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엑셀레이터 지원 프로그램을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 하구현 기자 |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선진국 주도로 확산... 공통 입장국 간 협력해야

韓, 공급망·첨단기술·탄소중립 분야 중심 통상정책 재편·CPTPP 가입 논의 필요

주요국의 보호무역주의 통상정책 기조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선진국에서 주도하는 녹색산업정책으로 2023년 기준 세계 무역규모가 2,744억 달러 감소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인협회는 10월 23일 ‘글로벌 보호무역주의의 확산과 대응 방향’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시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은 ‘新무역장벽의 한국경제 영향 및 대응’ 발표를 통해 미국 대선 이후 통상정책을 집중 조명하며 “대선 결과와 관계 없이 對중국 견제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통상장벽의 범위가 수출통제 위주에서 해외직접투자 및 전문인력 이동 통제로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글로벌 보호무역주의의 전망에 대해 발표한 버나드 호크먼 유럽대학연구소 교수는 “보호무역주의 확산은 선진국이 주도하고 있으며, 전체 통상정책 1,806건 중 보조금 수단이 1,030건으로 57.0%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무역연구기관 세계무역경보(GTA, Global Trade Alert)의 분석에 따르면, 2023년에 발표되거나 실행된 약 1,800여 개의 통상정책 중 70.9%가 선진국에 의해 실행됐으며, 이 중 47.7%가 중국, EU, 미국이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호크먼 교수는 녹색산업정책으로 인해 2023년 기준 세계 무역규모가 2,744억 달러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통상정책이 적용되는 분야와 동기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하며, “최근 통상정책은 안보(25.7%), 첨단기술(20.6%), 저탄소기술(15.3%) 분야를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기후변화 대응(28.1%), 공급망 안정성(15.2%) 등 비전통적 동기가 증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호크먼 교수는 “불확실한 국제 정세 가운데 각국 정부는 정책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정책 수행에 따른 파급 효과를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며, “기후변화 대응과 같은 비전통적 동기와 관련해 공통된 이해관계를 지니는 유사 입장국들과의 협력이 대안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 서울대학교 유명희 교수는 “환경, 노동, 인권 등 가치와 연계된 통상정책이 부상하고 있어 공급망, 첨단기술, 탄소중립 분야 중심의 통상정책 재편과 주요국과의 전략적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며, “불확실한 통상환경에 대한 다층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전문성을 강화해 리스크 대응 역량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광장 이태호 고문은 “과거 자유무역에서 경제안보 시대로 전환되면서 보호무역주의가 중요한 정책 도구로 활용되는 현 상황은 한국에 매우 도전적인 상황으로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논의도 본격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 하구현 기자 |

관세인재개발원, 해외 세관공무원 초청 연수회 개최

‘제29차 관세행정 능력배양 연수회’가 10월 21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됐다. 관세인재개발원은 이번 연수회에 세계관세기구(WCO) 아시아·태평양 및 아프리카 회원 9개국의 세관공무원 18명을 초청했다. 관세인재개발원은 2010년 WCO 지역훈련센터(RTC, Regional Training Center)로 지정된 후 매년 1~2차례에 걸쳐 WCO 아시아·태평양 및 아프리카 회원국 세관공무원을 대상으로 능력배양(Capacity Building) 연수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연수회에 참가한 외국 세관공무원들은 한국 관세청의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전자상거래 통관제도, 관세행정 신기술 개발 사례 등을 학습하고, 인천 특송물류센터 등을 견학하며 선진 관세행정을 직접 경험했다. 또한 참가국별로 구체적인 관세행정 실무사례를 발표·토론하면서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고 참가자들 간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었다.

인천세관,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구비 여부 확인 예정

인천세관이 오는 11월에 한·중 FTA에 의해 협정세율 적용을 신청한 신고 건에 대해 원산지증명서 구비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한·중 FTA에 따라 과세가격이 미화 700달러 또는 그 당사국의 통화로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물품에 대해서는 원산지증명서(C/O) 제출요건을 면제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화주 등이 미화 700달러 또는 그 상당액에 해당하는 물품을 수입신고하면서 원산지증명서가 없는데도 한·중 FTA에 의한 협정세율 적용을 신청하는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세관은 이미 신고한 건에 대해 원산지증명서 유무를 확인해 수정신고를 하는 등 자율적으로 시정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식약처,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 설명회 11월 진행

‘화장품 분야 정책설명회’가 11월 5일과 12일에 개최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해외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 현황, ▲국내 화장품 안전성 평가 도입 계획, ▲안전성 평가 가이드라인 등을 안내한다. 11월 5일에는 책임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표시·광고 지침 및 위반사례 등을 추가로 다루며, 12일에는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CGMP(미국 우수의약품제조품질관리 기준) 변경사항 및 위반사례 ▲해외 규제기관 GMP(우수 의약품제조품질관리 기준) 심사 사례 등을 추가로 다룰 예정이다.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는 화장품이 인체에 안전함을 입증하기 위한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보고서를 작성·보관하도록 하는 것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 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8년까지 이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설명회 사전등록은 10월 2일부터 대한화장품협회 홈페이지(www.kcia.or.kr)에서 할 수 있다. 현장등록은 불가하며, 보다 많은 업체가 참가할 수 있도록 업체당 1명으로 참석자를 제한하고 있다.

통관규정 변경에 지연까지 … 난감한 기업들 베트남 수출입 '이것' 달랐다

2015년 12월 20일 한·베트남 FTA 발효 이후 한국의 베트남 교역 규모는 2023년 794억 3,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2014년 베트남은 한국의 8위 교역국에 불과했지만, 2015년 4위로 올라서고 2022년부터는 일본을 제치고 2년 연속 3대 교역국 자리를 지키고 있다.

FTA 발효 10년차인 2023년 베트남 교역은 발효 전(2015년 300억 달러)과 비교해 2.5배 이상 성장하는 등 우리나라 교역 증가세를 주도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베트남 진출이 쉽지만은 않다고 토로한다. 베트남에서 원재료를 저렴하게 수급할 생각으로 뛰어들었지만, 생각지도 못한 고율의 수출세가 붙는 바람에 오히려 국내에서 조달하는 것보다 비용이 더 많이 나오기도 한다는 것.

우리나라 기업의 베트남 진출 수요가 많은 만큼 수입 규제나 관세 동향에 관한 정보 수요도 커지고 있다. 이러한 기업들의 니즈에 발맞춰 인천세관과 KOTRA, (주)호치민대한민국총영사관은 '2024 베트남 수출 확대 전략 세미나'를 준비했다. 10월 8일 한국과 베트남에서 동시 진행돼 현지 시장 동향과 FTA 활용, 물류, 통관 실무 등을 알아볼 수 있었다.



‘2024 베트남 수출 확대 전략 세미나’를 진행 중인 인천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의 최치형 주무관(출처 : 인천세관)

베트남 수입 규제 및 관세 동향

KOTRA 호치민의 황혜준 관세사는 베트남의 전반적인 무역 동향과 관세 제도에 대해 설명했다. 베트남 통계총국(GSO)에 따르면, 2024년 1~3분기의 베트남의 총교역액은 5,784억 7,000만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16.3% 증가했다.

황 관세사는 “베트남은 사회주의공화국인만큼 국가기관이나 세관의 대응이 우리보다 다소 경직된 분위기다”라고 말했다. 수도 하노이가 위치한 북부는 전자장비, 반도체 산업이 활발하며, 호치민이 위치한 남부는 의류, 신발, 식품 관련 가공산업이 활발하다.

우리나라는 베트남의 주요 수출국 3위이자 수입국 2위다. 베트남은 미국, 중국, 한국, 일본 순으로 활발하게 교역이 이뤄지고 있다. 주요 수출입 품목을 살펴보면 저렴한 인건비를 활용해 부품이나 섬유를 수입해서 완제품으로 가공한 뒤 재수출하는 형태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2024년 1~7월 기준 베트남의 주요 수출품목은 전자제품 및 부품(39억 5,900만 달러), 휴대폰 및 부품(32억 5,800만 달러), 기타 기계, 장비 등(28억 달러), 섬유 및 의류(20억 2,700만 달러) 순이다. 베트남의 주요 수입품목은 전자제품 및 부품(59억 4,300만 달러), 기계 및 장비(26억 8,500만 달러), 원자재 및 연료(16억 2,900만 달러), 섬유 및 의류(15억 6,700만 달러) 순이다. 즉 수출품목과 수입품목이 굉장히 유사하다. 부품을 수입해 해당 공장에서 가공 및 제조한 후 수출하는 형태가 많은 것이다.

베트남의 주요 세금 제도의 경우 우리와 유사하면서도 차이가 있다. 우선 베트남 국경 간 이동하는 물품에 대해 부과하는 수출입세가 있다. 우리와 다른 점은 베트남의 경우 국가 자원 보호 및 생산 원료의 국내 확보를 목적으로 일부 원자재 등에 대해 수출세(thue xuất khau)를 부과한다는 것이다.

황 관세사는 “제품별 수출세율이 최소 1%부터 최대 40%까지 적용되기 때문에 베트남에서 우리나라로 수입하는 업체의 경우 베트남 수출세 때문에 금액이 좀더 상승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며, “베트남과 EU가 협정 맺은 FTA는 수출세에 대해 양허세가 적용되지만, 우리와는 양허세가 적용되지 않고 기본 세율이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 베트남 주요 관세 동향 ●

세목	상세 내용	계산 방식	근거 법령
수출입세	- 베트남 국경을 이동하는 물품에 대해 부과하는 수출입세 ※ 수출세(thue xuất khau) - 한국과 달리 베트남의 경우 국가자원 보호 및 생산원료 국내 확보 목적으로 일부 원자재 등에 대해 수출세를 부과함 - 제품별 수출세율 최소 1% ~ 최대 40% 적용	- 과세가격×수출입세율 - 과세가격 - 수출물품 : FOB가격 기준 - 수입물품 : CIF가격 기준	수출입세법 (107/2016/QH13)
특별소비세	- 특정 재화의 생산이나 수입 혹은 특정 서비스의 제공 시 적용되는 세금 - 과세 대상 : 담배, 증류주, 맥주, 석유, 오토바이(배기량 125cc 초과) 등	(과세가격+수입세)×특별소비세율	특별소비세법 (27/2010/QH12)
환경보호세	- 환경에 악영향을 주는 특정 물품의 생산 및 수입 시 부과되는 세금 - 과세 대상 : 항공, 연료, 디젤유, 등유, 윤활제, 갈탄, 무연탄 등	과세물품단위×품목별 종량세	환경보호세법 (57/2010/QH12)
부가가치세	- 베트남에서 소비하는 물품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 - 품목별 0%, 5%, 10% 세율 적용됨	(과세가격+수입세+특별소비세+환경보호세)×부가가치세율	부가가치세법 (13/2008/보12)

출처 : KOTRA 호치민 황혜준 관세사

그밖에 베트남에서는 담배, 증류주, 맥주, 석유 등에 대해 특별소비세를 부과한다. 예를 들어 담배의 경우 75%의 세율이 부과되며 맥주는 65%의 세율이 부과된다. 사실상 우리나라의 개별소비세보다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항공 연료, 디젤유, 등유 등 환경에 영향을 주는 석탄계 물품의 생산·수입 시에는 환경보호세를 부과한다.

황 관세사는 “환경 관련 품목으로 베트남에 진출하려는 기업은 환경보호세뿐만 아니라 환경보호 기금, 환경보호보험 등이 추가될 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베트남의 AEO 제도도 주목할 만하다. AEO란 세관으로부터 수출입 물류 업무의 안전성을 공인받은 업체로 전 세계 83개국에서 해당 업체에 통관절차 및 관세행정 혜택을 부여한다. 베트남은 이를 ‘우선기업(Doanh nghiệp ưu tiên)’이라는 명칭으로 2013년 정식 도입했다. 우리보다는 공인 절차가 다소 복잡해 현재 75개社만 취득했으며, 그중 우리나라 기업은 14개社다. 우리나라와 베트남은 세관 당국 간 협정에 의해 AEO 공인기업이 상대국에서도 상호주의에 따라 동등한 수준의 세관 절차 특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인정하는 AEO MRA 체결 추진 계획을 밝혔다. AEO MRA가 발효되면 우리나라에서 AEO 공인을 받은 기업은 베트남으로 진출 시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황 관세사는 “서류 사후 제출, 통관절차 우선권 등 다양한 혜택이 있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두 가지가 크게 와닿을 것”이라며, “첫 번째는 검사 면제, 그리고 두 번째는 세무 절차의 우선권으로 세금 납부 기한 유예가 여기에 포함된다”라고 말했다. 베트남은 우리나라보다 통관절차가 오래 걸리는 편으로 시간이 중요한 원자재를 수입통관하는 기업은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 베트남 우선기업으로 공인되면 검사율이 0%대에 수렴할 정도로 통관절차가 간소화되니 이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베트남의 내국수출입 제도는 물품의 국경 이동이 없는 베트남 내 이동에 대해서도 수출 및 수입으로 인정되는 거래 형태를 말하는데, 가령 ▲A항. 임가공 계약 하에 물품을 공급하는 형태, ▲B항. 수출가공구 입주 수출가공기업(EPE) 또는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과 베트남 기업 간 매매, ▲C항. 베트남에 대표 사무소가 없는 외국 상인과 베트남 기업 간 매매 등이 있다.

“내국수출입 제도는 공급을 수출로 보기 때문에 관세 면제 및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하다. 내국수출입에 따른 인정이 되지 않으면 ‘베트남 내 거래’로 봐 관·부가세 및 기타 세금을 모두 부담해야 하므로 기업은 세금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수출제조 형태로 거래한 기업이라면 C항이 삭제될 경우 세금 부담이 커진다. A항(임가공) 또는 B항(비관세구역) 제도로 변경이 가능하다면 이를 고려하는 것도 하나의 대응 방안이 될 수 있다”

- KOTRA 호치민의 황혜준 관세사

물품이 반출되지 않고 국내에서 이동하기 때문에 이를 수출 및 수입으로 봐야 하는 게 맞느냐라는 이슈가 기업들 사이에서 제기됐다. 이에 내국수출입 제도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컸으나 베트남 관세총국은 올해 9월 초 이와 관련한 개정안에 대해 의견수렴을 위한 공문을 발표했다. 해당 개정 초안을 살펴보면 내국수출입 규정 A, B, C항 중 임가공과 비관세에 해당하는 A, B항은 별도 지침에 따라 유지되고 C항은 삭제될 것으로 보인다. 단 기업들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C항은 해당 개정시행령의 유효일로부터 1년까지 유예가 적용된다.

또한 부처별로 수입금지 품목을 규정하고 있는 만큼 이를 면밀히 살펴보는 것도 필요하다. 우선

문화재를 상징하는 물품, 문화적으로 부도덕한 물품이 금지된다. 또 하나 특징은 중고품에 대한 규제가 심하다는 것이다. HS Code 제84·85류에 해당하는 중고기계는 조건부 수입 품목에 해당된다. 품질 관련 검사가 필요한 물품이나 의료·문화·동물검역 및 식물검역이 필요한 물품, 식품 안전 검사가 필요한 물품 등은 조건부 수입 품목에 해당돼 일부는 통관 전 견본품을 채취해 해당 규정에 부합하는지 검사하는 절차를 거치기도 한다.

항 관세사는 “각 부처 및 기관이 개별적으로 조건부 수입 품목 목록을 작성하기에 통일된 기준이 없다. 견본품 검사가 추가로 진행될 수 있으므로 수출 수량을 넉넉히 준비하는 것이 좋다”며, “품질 관리법에 해당되는 품목도 농촌개발부부터 산업무역부,公安부 등 여러 기관이 관리하고 있다. 어느 기관에서 관할하느냐에 따라 수출 시 필요한 서류도 달라진다”고 조언했다.

가령 보건부(MOH) 관할 품목에는 식품, 의료기기, 화장품, 의약품, 살충제 등이 있다. 이 품목들은 수입자 자격 취득 여부를 확인한 후 수입물품 확인, 유통 등록·유통번호 보유·제품선언을 거친 뒤 수량 제한 없이 수입신고 또는 보건부 수입 허가 신청 절차로 나뉜다. 최초로 진출하는 품목은 보건부에 수입허가 신청 또는 신규 등록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유의해야 할 점은 이미 베트남에 진출한 기업이라도 유통업자별로 등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항 관세사는 “이미 베트남에 같은 품목을 수출한 이력이 있더라도 유통사가 달라졌다면 그에 맞게 다시 품목등록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의료기기의 경우 수입물품 확인 단계에서 A·B 등급으로 분류되면 수입자 소재지의 보건국에서 적용표준 신고를 하게 된다.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높은 품목은 C·D 등급으로 분류되는데, 이 경우에는 베트남 보건부에 의료기기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의료기기 등록증 번호를 발급받기까지 최소 3일에서 약 2개월까지 소요된다. 다만 우리나라 기업은 ‘패스트트랙’ 국가로서 간소한 허가를 진행할 수 있어 약 2주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면 된다.

식품류 수출도 고려해야 할 부분이 있다. 동식물 및 수산물들은 베트남에서 금지되는 경우가 있으며 HS Code에 따라 보건부, 농업농촌개발부, 무역산업부 등 관할 기관이 규정돼 있다. 과일, 채소, 구근류의 경우 우리나라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www.qia.go.kr)에서 수입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식품 종류에 따라 등록절차 및 기관, 필요 서류가 상이하므로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특히 생화, 과일, 채소, 곡물조제품 등 일부 품목의 경우 수출국에서부터 식물검역증명서 제출이 요구되기도 하므로 반드시 물품을 선적하기 전 필요한 인증서를 철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전략물자·원산지·통관절차 한번 더 확인해야

인천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의 최지형 주무관은 ‘베트남 수출기업의 FTA 활용 방안 및 수출통관 유의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최 주무관은 “우리 기업이 세관과 겪을 수 있는 여러 문제 상황을 이야기하려고 한다”며 운을 뗐다. 우선 그는 “전국 본부세관에 위치한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서 FTA 인증, 해외 통관애로 해소, 찾아가는 수출지원 등 각종 지원을 하고 있다”며, “해외 통관이 지체될 경우 센터로 연락을 하면 해외에 파견된 관세사를 통해 지체된 이유를 알아보고 해결해줄 수 있다”고 했다.

관세청 통관실적을 살펴보면 수출물품의 검사 비율은 2023년 0.11%이며, 적발 비율은 12.4% 정도다. 적발 건수의 대부분이 수리 후 분석(42.3%), 신고 오류(41.5%) 문제였으며 세관장 확인 대상으로 변경(7.9%), 원산지규정 위반(4.2%) 등도 포함됐다.

현재 베트남 무역에서 FTA 활용률은 수출 70.8%, 수입 83.9% 선이다. ASEAN이나 다른 협정 대비 활용률이 낮은 이유에 대해 최 주무관은 “많은 기업이 FTA 혜택을 활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하거나 FTA 적용을 위한 원산지증명서 발급 과정이 복잡하다고 인식해 활용하기를 주저하는 경우가 많다. 게다가 현지 수입 규정이나 관리 절차가 까다로워 FTA를 활용한 수출입이 오히려 번거롭다고 여기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FTA 혜택을 받으려면 엄격한 원산지 규정과 절차를 준수해야 하는데, 특히 중소기업은 전문인력이나 자원이 부족해 FTA를 적극 활용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

산업별 활용 현황 (천불, %)				
	FTA특혜대상수출	수출활용률	FTA특혜대상수입	수입활용률
농림수산물	278,543	88.5	582,528	91.2
광산물	1,546,515	97.1	16,383	17.3
화학공업제품	1,404,966	78.9	78,178	84.4
플라스틱고무 및 가죽제품	631,096	53.8	38,453	74.1
섬유류	1,051,854	37.9	1,657,052	94.6
생활용품	301,642	52.6	432,672	64.3
철강금속제품	692,547	76.1	92,443	76.6
기계류	623,982	59.9	266,362	69.8
전자전기제품	751,783	66.2	589,980	71.9
잡제품	4,111	79.5	117	27.7
합계	7,287,039	70.8	3,774,169	83.9

출처 : 인천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최지형 주무관

최 주무관은 수출신고 시 주의해야 할 상황 3가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첫 번째는 원상태·계약상이 수출 사례다. 수입신고 수리된 물품이 ① 계약 내용과 다르고, ②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이나 형태가 변경되지 않은 경우, ③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④ 보세구역에 반입해 다시 수출한 때 환급이 가능하다. 다만 조건이 까다롭다는 것이 문제다. 가령 중국에서는 회사의 검수보고서나 반품하겠다는 내용의 이메일은 입증서류로 인정하지 않는다. 국제적으로 공인된 검사기관에서 받은 검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기계 수입 후 일주일만이라도 사용해봤다면 원상태 수출이 거부되며, 자동차의 경우도 운행기록이 단 200km에 불과하더라도 관부가세 환급이 불가하다.

최 주무관은 “물품 선적이 완료된 후에는 거래구분 정정이 안되는 만큼 수출신고필증을 사전에

확인하고 계약상이 물품의 경우 보세구역에 장치한 후 수출신고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두 번째로 주의해야 할 사항은 전략물자다. 무기를 만들지 않는 만큼 전략물자에 해당할 리가 없다고 안이하게 생각하는 기업이 많다. 하지만 전략물자의 75.6%는 이중용도 품목으로 일반 산업 용도와 우려 용도로 쓰일 수도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탄소섬유는 테니스 라켓이나 골프클럽의 원료이기도 하지만, 미사일 동체 무게의 경량화를 위해 사용되기도 한다.

기업이 수출하려는 물품 등을 잘 알고 있다면 전략물자관리시스템(www.yestrade.go.kr) 등을 통해 물품의 특성 및 기술사양을 직접 입력해 판정받을 수 있지만, 전략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잘 알지 못한다면 전문판정을 신청해야 한다. 이중용도는 전략물자관리원, 군용물자는 방위사업청, 원자력은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에서 판정을 맡고 있다.

최 주무관은 “기계 압력 변환기나 밸브 베어링, 반도체나 LCT 장비 등을 취급하고 있다면 수출 계약 후 선적까지 걸리는 2주 기간에 전략물자관리원 등에 판정을 의뢰하는 것이 좋다. 전략물자에 해당하는 경우 「대외무역법」 위반으로 세관의 통보 없이 검찰에 고발된다”고 조언했다.

최 주무관은 FTA와 관련해 원산지 판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6조에서 원산지 판정 기준 적용 대상 물품 중 “우리나라에서 제조·가공 과정을 통해 수입원료의 세번과 상이한 세번(HS 6단위 기준)의 물품을 생산하고 해당 물품의 제조원가에서 수입원료의 수입가격(CIF 기준으로 실제 거래된 가격)을 공제한 금액이 제조원가의 51% 이상인 경우” 또는 “우리나라에서 제조·가공 과정을 통해 제1호의 세번 변경이 되지 않은 물품을 최종적으로 생산하고 해당 물품의 제조원가에서 수입원료의 수입가격을 공제한 금액이 제조원가의 85% 이상인 경우”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으로 본다고 규정돼 있다.

미국은 180억 달러 규모의 중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 인상을 발표한 바 있다. 반도체는 25%에서 50%로, 전기차는 25%에서 100%로 관세가 인상된다. 이를 앞두고 중국 기업들이 베트남으로 많이 이전한 상황이다. 한국무역협회 워싱턴지부는 9월 16일 ‘美·베트남 무역 동향 및 통상 현안 점검’을 발표하며 베트남에 진출한 중국 기업들의 對美 수출이 증가할수록 미국의 對베트남 수입규제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1988년부터 2024년 8월까지 한국이 베트남의 최대 투자국이지만, 최근 들어 중국 기업들의 베트남 진출 및 투자가 가속화하면서 2023년에는 투자 건수(1,022건)와 금액(91억 5,000만 달러) 모두 중국이 가장 많았다.

최 주무관에 따르면, 특히 미국은 원산지 판정 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따지는 경우가 많다. 가령 미국 세관은 전자레인지의 본질적인 특성은 높은 주파수의 진동을 만들어내는 장치 ‘마그네트론’이라고 보고 마그네트론을 생산한 국가를 원산지라고 결론을 내렸다. 다양한 원산지 부품을 조립해 완제품을 만들었을 경우 완제품의 본질적인 특성에 해당하는 부품의 원산지에 따라 판정 결과는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즉, 베트남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부분품을 우리나라 기업이 가져

와 조립한 뒤 미국으로 수출한다고 할 때 원산지가 한국도, 베트남도 아닌 중국産으로 판정이 날 수도 있다. 기업들이 각별히 주의해야 할 부분이다.

□ MINI INTERVIEW | 인천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최지형 주무관

Q. 베트남과 무역하는 기업이 FTA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A. 물론 베트남 내 현지 수입규정의 제한으로 기업은 FTA 활용이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FTA를 통해 기업들은 낮은 관세율로 제품을 수출할 수 있어 가격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면 좋겠다.

베트남은 ASEAN 국가들 중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곳으로 소비 시장 또한 크게 늘며 한국 식품에 대한 수요도 커지고 있다. FTA를 통해 수출비용을 절감하면 타국 기업 대비 경쟁 우위를 가질 수 있는 만큼 베트남 시장에서 수출을 확대하려면 FTA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좋다. 베트남과 한국 모두 FTA 활용을 장려하고 있으며, 양국 정부는 기업들이 협정의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결국 더 많은 시장 기회를 잡을 수 있으리라 본다.

Q. 對베트남 수출입 중소기업이 통관과 관련해 어떤 어려움을 많이 토로하는가?

A. 베트남의 통관 절차는 비교적 규정이 자주 변경된다. 많은 기업이 베트남의 수입 규제, 절차 변경 등에 대해 정보와 경험이 부족하고 특히 베트남 현지에서 요구하는 서류준비, 검역 규정 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통관이 지연되거나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한다. 베트남 현지 시장 정보나 거래 네트워크가 부족해 현지 비즈니스 파트너 발굴, 협력 체계 구축 등에 어려움이 있으며 시장 진입 시 큰 장벽이 된다. 일부 베트남 지역의 경우 물류 인프라가 미흡한 점도 문제다. 운송 중 지연, 파손 등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게다가 베트남과의 무역 거래 시 신용장을 통한 결제가 이뤄지거나 선불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자금력이 부족한 기업으로서는 이러한 결제 방식이 어렵고 외환 관리와 같은 금융 문제에 부딪치기도 한다.

Q. 통관과 관련해 애로사항을 토로하는 기업에 당부할 것이 있다면?

A. 베트남의 통관 절차는 기업 입장에서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다. 중소기업일수록 현지에 신뢰할 수 있는 통관 대행사나 전문가를 활용하면 규정 변경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고 통관 지연으로 인한 추가 비용을 줄일 수 있다. 또한 통관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경우 현지 통관당국과 협력해 신속히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관세청과 충분히 소통한다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HS Code, 베트남서 알아보면 한발 늦어

세미나의 마지막 시간은 베트남 현지 물류업체 PTB그룹의 전인태 부장이 베트남 물류 및 통관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였다.

전 부장은 베트남으로 수출하기 전 외국계 투자 회사 라이선스부터 발급받으라고 권장했다. 법인별로 수입이나 수출이 가능한 품목의 카테고리가 정해지는 경우가 많으며 수출 물품의 HS Code를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 유통기업이라면 어떤 물품이든 수입 및 판매가 가능할 것이라 오해할 수 있는데, 기대와 달리 수입통관 시점에 수입 판매 권한이 없다고 판정되기도 한다는 것. 이때 화물을 항구에 흘딩하고 라이선스 내용을 변경하려는 기업도 있지만, 문제는 이 기간이 매우 오래걸린다는 것이다. 시간이 다소 지체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화물을 본국으로 다시 되돌려 보낸 뒤 라이선스를 변경하고 재수입하는 일들도 비일비재하다고.

또한 베트남에서는 HS Code를 정확하게 판정을 받기 힘들다. 세관에 관련 질의를 하더라도 유사한 법령을 안내하며 제품의 HS Code를 잘 확인하라는 내용의 형식적인 답변이 오는 일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답변 또한 세관에 질의를 하고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야 오는 일이 많아 사실상 사업 운영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결국 한국에서 관세사에 의뢰하거나 세관에 HS Code에 검토 요청을 하는 등 미리 자문을 받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수입자의 라이선스를 통해 파악된 HS Code로 베트남의 전자통관시스템에 업로드된다. 관세·부가세가 판정된 뒤 수입자의 업력에 따라 화물검사 유무가 달라진다. 그린은 검사 면제, 옐로우는 검사 필요성, 레드에는 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화물을 뜻한다. 제품명이나 라이선스와 HS Code가 맞는지 의구심이 드는 경우 레드로 판정될 때가 많다. 제조를 위해 최초로 설비를 들어오는 기업은 대부분 레드 채널로 시작한다. 그후 장기간에 걸쳐 제조 및 수출을 여러 차례 하면서 검사율이 떨어지고 그린 채널로 변경된다.

전자통관 이후에 세금 납부를 하고 그 이후 지역 세관에서 서류 통관을 거치는데, 이 과정에서 HS Code가 변경돼 관세를 추가로 납부하거나 수입허가를 다시 받아야 하는 일도 발생한다. 이렇게 검사 때문에 베트남에서는 통관에만 7~10일까지 걸리기도 한다.

세미나에서 강연을 한 전문가들은 모두 수출입을 위한 통관절차에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기에 미리 한국에서 HS Code를 비롯해 필요한 서류 등을 꼼꼼히 챙기라고 강조했다.

황혜준 관세사는 “HS Code가 전 세계적으로 6단위까지는 공통으로 규정된다. 국가별로 견해의 차이가 있을 때는 수입국의 기준과 해석에 따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결국 우리나라의 HS Code를 참고하되 쟁점이 되는 HS Code와 세율 차이가 크다면 베트남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문의해 보거나 보수적으로 신고하는 것이 낫다”고 조언했다.

인천세관의 최지형 주무관은 “통관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부분 문제는 사소한 규정 미준수에서 발생한다. 결국 베트남의 최신 통관 규정과 수입 요구사항을 철저히 파악하고, 모든 서류를 정확하게 준비할 수밖에 없다. 특히 원산지증명서, 인보이스, 포장명세서 등 필수 서류에 대한 사전 검토가 중요하며, 미리 준비해 통관 지연을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최 주무관은 비용 문제를 사전에 관리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통관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 “수수료, 보관료, 지연비용 등을 사전에 계산하는 것도 중요하며, 추가 비용에 대비할 수 있도록 예산을 관리해야 한다”며, “통관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물류 및 운송 전략 수립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김성은 기자 |

FTA 원산지증명서 제출 면제 기준에 관한 문의

홍 재 상 | 예슬사랑관세사무소 관세사

1. 질문 & 답변

협정명	한·호주 FTA
질문	한·호주 FTA에서 미화 1,000달러 이하의 물품은 상업용 물품 여부와 관계 없이 원산지증명서 제출 면제가 가능한지 문의합니다.
답변	호주로부터 우리나라로 수입하는 원산지 상품은 상업용 여부와 관계 없이 미화 1,000달러 이하인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 없이 현품의 원산지표시와 구매영수증 등을 확인한 후 간이한 방법으로 협정 적용이 가능합니다.

2. FTA 원산지증명서

(1) 개요

FTA가 체결된 국가들 간 약속(양허)된 특혜관세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수입국가에 FTA 원산지증명서가 제출돼야 할 것이다. FTA에 따라 규정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FTA 원산지증명서는 협정에서 명시된 서식에 정해진 작성 방법에 따라 작성되며, FTA 원산지증명서는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에서 발급하는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와 수출자나 생산자가 작성하는 자율발급 원산지증명서로 나뉜다.

다만 협정에서는 일부 소액물품의 경우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면제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한·중 FTA에서는 과세가격이 미화 700달러 또는 그 당사국의 통화로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원산지 상품의 탁송에 대해 원산지증명서 제출 요건을 면제하고 있다. 또한 한·호주 FTA에서도 수입물품 과세가격이 미화 1,000달러 이하(호주의 경우 호주달러 1,000달러 이하)인 물품은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면제된다. 그러나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FTA 특혜관세 적용을 위해 원산지증명서가 필요하다는 사실은 틀림없을 것이다.

(2) 원산지증명서 제출 면제 기준

원산지증명서 제출 면제 기준은 일반적인 무역거래보다는 여행자휴대품이나 해외직구 등 소액물품의 거래 또는 샘플 거래 등을 할 때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하지 않아도 FTA 협정관세 적용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처리 절차를 간소화하는 제도라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한·호주 FTA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한·호주 FTA 제3장 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

제3.19조(원산지증명서 면제)

각 당사국은 다음의 경우 원산지증명서가 요구되지 아니하도록 규정한다.

가. 관세가격이 한국의 경우 미화 1,000 달러 또는 이에 상당하는 금액 그리고 호주의 경우 호주달러 1,000달러이나, 각 당사국이 설정할 수 있는 보다 더 많은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상품 수입의 경우, 또는

나. 수입 당사국이 원산지증명서 요건을 면제한 상품 수입의 경우

다만, 수입이 제3.15조 및 제3.17조의 증명서 요건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거나 준비되었다고 합리적으로 간주될 수 있는 일련의 수입의 일부를 구성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원산지증명서 제출 면제 해석은 가격에 관한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 대부분 원산지증명서 제출 면제 규정은 가격에 따라 제출 면제 여부를 구분하기 때문이다. 다만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고려사항이 존재한다.

원산지증명서 제출 면제 규정에 관해서는 대부분 가격 관련 제한 사항이 있는데, 협정에 따라 700달러·1,000달러 등 다양하고, 계약당사국 간 기준이 다른 경우도 존재한다. 예를 들어 한·EU FTA에서는 유럽연합 당사자로 수입되는 경우, 소포는 500유로 또는 여행자의 개인 수하물의 일부를 구성하는 제품은 1,200유로를 원산지증명서 면제 대상으로 한다.

하지만 대한민국으로 수입되는 경우, 소포와 여행자 개인 수하물 모두 미화 1,000달러를 면제 대상으로 하고 있다. 다만 여느 협정들과는 다르게 한·인도 CEPA는 원산지증명서 면제 규정에서 개인 간에 송부된 소포 또는 여행자 개인 수하물의 일부를 구성하는 상품은 각 당사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의 제출 요구 없이 원산지 상품으로서 인정될 수 있다고만 규정할 뿐 별도로 가격 관련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해당 물품이 각 협정상 원산지 상품이 아닌데도 특혜관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사항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한·호주 FTA의 해석상 해당 물품이 호주산인 경우 제출 면제 규정에 따라 FTA 특혜관세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인지 중국산 제품이어도 FTA 적용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것이다.

원산지증명서 제출 면제에 관한 규정은 ‘원산지증명서’의 제출을 면제하겠다는 것이지 해당 물품이 호주산이 아니어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따라서 해당 물품이 협정에서 정하는 원산지 규정을 충족해야 한다는 것은 원산지증명서 제출 대상 물품과 차이가 없다. 만약 300달러 상당의 중국산 제품을 호주에서 수입하는 경우 원산지증명서 제출 면제 규정에 해당되는지 확인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중국산 제품은 한·호주 FTA 특혜관세 적용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원산지증명서 제출 면제 규정이 국내법상 사후적용 신청 시에도 적용되는지 여부가 문의사항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FTA 관세법」) 제9조에서는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제8조(협정관세의 적용신청 등)에 따른 협정관세의 적용 신청을 하지 못한 수입자는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원산지증명서 제출 면제 대상에 해당되는 협정별 기준가격 이하의 물품에 대해 수입통관 시 협정관세 적용 신청을 하지 못하는 경우 원산지증명서 없이 FTA 특혜관세 사후적용을 신청할 수 있는지 문의가 있을 수 있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 관세청에서는 수입통관이 완료된 후에는 해당 물품의 동일성 등에 대한 입증이 곤란해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해야 협정관세 사후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변한 바 있다. 이는 수입통관 당시에는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등을 확인해 협정관세 적용 간소화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나 이미 수입통관이 이뤄진 경우 동일성에 대한 입증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3. 질문 & 답변 사례에 대한 해석

(1) 질문의 요지

질문 & 답변 사례는 한·호주 FTA에서 미화 1,000달러 이하의 물품은 상업용 물품 여부와 관계 없이 원산지증명서 제출 면제가 가능한지 문의다. 이는 협정에서 가격적인 제한사항 외에 추가 요건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문의다. 이는 각 협정별 해석이 다를 수 있는데, 이번 호 주제인 한·호주 FTA에서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살펴본다.

(2) 원산지증명서 제출 면제 관련

협정별 구분이 필요한 것은 원산지증명서 제출 면제 대상 거래의 제한이 가격 조건 이외에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한·호주 FTA 제3.19조의 규정을 보면 관세가격이 한국의 경우 미화 1,000달러, 호주의 경우 호주달러 1,000달러에 대한 가격 요건만 있을 뿐 다른 적용 요건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한·호주 FTA의 경우 해당 물품이 수입되는 의도에 관계 없이 규정 적용이 가능한 것이다. 한·미 FTA도 마찬가지로 금액적인 부분 외에 따로 제한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해당 물품이 수입되는 형태가 여행자 휴대품인지 개인 간 택배송부인지, 해외 직구에 의한 수입인지 등은 고려사항이 아닌 것이다. 다만 원산지 상품인지 여부는 간이하게나마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현품의 원산지표시와 구매영수증 등을 확인한 후 간이한 방법으로 협정 적용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관세청에서는 호주로부터 우리나라로 수입하는 원산지상품의 경우 상업용 여부와 관계 없이 미화 1,000달러 이하인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 없이 현품의 원산지표시와 구매영수증 등을 확인한 후 간이한 방법으로 협정 적용이 가능하다고 답변하고 있다.

이와 유사한 사례로서 관세청에서는 미화 930달러짜리 미국산 타이어를 직구로 구매하는 경우 한·미 FTA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수입물품 과세가격이 미화 1,000달러 이하의 소액물품은 구매영수증, 제품의 원산지표시 등을 통해 소액물품 협정관세 적용 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하지만, 수입물품을 분할해 수입하는 등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미화 1,000달러를 초과하지 않도록 부정한 방법을 사용해 수입하는 물품은 제외된다고 안내한 바 있다.

다만 한·EU FTA, 한·영 FTA에는 가격적인 요건 외에도 원산지신고서 제출 면제에 관련해 사인 간(private person to private person) 소포로 송부되거나 여행자 휴대품의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원산지 증명의 면제에 대해 그러한 제품이 상업적으로 수입되지 않고 이 의정서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신고됐으며 그 신고의 진실성에 관해 의심이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여행자 휴대품이나 상업적인 목적이 아닌 개인 간 보내는 택배 등은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다만, 해외직구 등 상업적인 목적으로 물품이 수출입되는 경우 한·EU FTA의 원산지 증명서 제출 면제 규정인 1,000달러(대한민국으로 수입되는 경우) 이하로 수입 시에도 한·EU FTA에 따른 원산지신고서가 제출돼야 한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에서는 한·영 FTA의 원산지신고서 제출 면제에 대해 한·영 FTA는 한·EU FTA와 마찬가지로 사인 간(private person to private person) 소포로 송부됐거나 여행자 휴대품으로 반입된 미화 1,000달러 이하(우리나라로 수입되는 물품 기준)의 비상업적 물품에 한해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면제되며, 전자상거래로 구매한 물품에 대해서는 원산지신고 문안이 적정하게 기재된 해당 물품의 상업서류, 영수증, 우편물 세관신고서 등을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영 FTA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안내한 바 있다.

(3) 최근 동향

원산지증명서 제출 면제나 소액물품에 대한 FTA 적용은 간소화된 절차를 적용한다는 측면에서 ① 원산지 상품이 아닌데도 FTA 특혜관세 적용 신청을 하거나, ② 자율발급 원산지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해 FTA를 적용하는 시도를 하거나, ③ 각 협정에서 적용하는 기준가격을 넘어서는 물품에 대해 협정관세를 적용할 때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하지 않은 상태로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으려는 시도를 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2023년 기사¹⁾에 따르면 해외 경매 사이트에서 고가의 위스키를 직접 구매(직구)하면서 구매 영수증을 위·변조해 12억 원의 관세를 포탈한 20대 회사원 A씨 등이 세관에 적발됐는데, A씨 등은 위스키에 부과되는 세금을 낮추기 위해 가격을 실제 구매가격보다 낮게 신고하거나, FTA를 적용해 무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 허위 원산지증명 서류를 제출하는 수법으로 세금 납부를 회피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EU FTA는 소액물품인 경우에도 사인 간 소포로 송부된 건에 대해서만 원산지증명의 면제가 되고, 금액을 넘었다고 하더라도 한·EU FTA 원산지신고서 특성상 자율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최근 인천세관에서는 한·중 FTA 협정세율 적용 관련 원산지증명서 구비 여부 확인 계획 통보[인천세관 통관감사2과-2529(2024. 10. 17.)]를 공지하면서, 한·중 FTA에 따라 과세가 격이 미화 700달러 또는 그 당사국의 통화로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물품에 대해서는 원산지증명서의 제출 요건을 면제하고 있는데, 일부 화주 등이 미화 700달러 또는 그 상당액에 해당하는 물품을 수입신고하면서 원산지증명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한·중 FTA에 의한 협정세율 적용을 신청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인천세관에서는 한·중 FTA에 의해 협정세율 적용을 신청한 신고 건에 대한 원산지 증명서 구비 여부를 확인(2024년 11월)할 예정으로 원산지증명서가 없는데도 협정세율 적용을 신청한 것이 확인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비교적 소액물품을 수입하는 상황에서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하지 않은 채 협정관세 적용 신청이 이뤄지는 상황에 대한 것으로 통관 실무상 관할세관이 수입통관 당시 모든 원산지증명서 원본(사본)에 대한 서류심사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 따라 무분별하게 특혜관세가 이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보인다.

인천세관의 이러한 공지는 한·중 FTA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제출 면제 대상물품에 대한 것은 아니나 최근 급증하고 있는 무분별한 FTA 특혜관세 적용 신청에 대한 관리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일반 수입신고뿐 아니라 해외 직구 등의 상황에서도 가격기준에 따른 원산지 증명서 제출 면제 규정, 해당 가격기준을 넘어서는 수입 건에 대해서는 적정한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한 상태에서 FTA 특혜관세 적용 신청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이에 따라 관세사 등 수입통관 담당자들은 각 협정 및 국내 「FTA 관세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확히 확인하고 FTA 특혜관세 적용업무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1) '1,000만원 짜리' 희귀 위스키 해외직구 하면서 관세 12억 포탈(경향신문 2023. 6. 22.)

질의 응답 사례

본 지면에서는 관세청 고객지원센터에서 상담한 사례 중 주요 내용만을 엄선해 제공합니다. 다만 제공하는 사례는 법률적인 유권해석이 아니며, 민원인에게 참조의 편의상 제공하는 것이므로 법률적으로 권한 있는 해석이 필요하면 서면으로 별도 질의하거나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 신청 등의 절차를 거치시기 바랍니다.

관세청 기획조정관 납세자보호팀 고객지원센터

수입 / 수입신고필증 교부

수입신고를 한 관세사무소가 폐업한 경우 수입신고필증을 재발급받을 수 있나요?

해당 수입신고 건의 신고인이 폐업하고 관세사무소를 재개업했다면, 재개업한 관세사무소에서 수입신고필증 출력 및 화주교부등록(화주가 직접 출력하려는 경우)이 가능합니다. 재개업을 하지 않은 경우 통관지 세관에 수입신고필증 재교부 신청서를 제출하면, 담당부서에서 검토 후 재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품목분류 / 싱크대 물막이의 HS Code

주방에서 설거지를 할 때 물이 튀지 않도록 막아주는 실리콘 소재의 싱크대 물막이는 어느 호에 해당되나요?

관세율표에서는 제3924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식탁용품·주방용품·그 밖의 가정용품·위생용품·화장용품’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문의하신 물품이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가정용품·위생용품·화장용품’의 ‘기타’에 해당된다면 제3924.90-9000호에 분류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3924호 해설서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 제3924호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가정용품·위생용품·화장용품’

3924.10 - 식탁용품과 주방용품

3924.90 - 기타

이 호에는 다음의 플라스틱 제품을 분류한다.

... <중략> ...

(C) 그 밖의 가정용품 : 예를 들면, 재떨이·온수병·성냥갑 홀더·쓰레기통과 이동식 쓰레기통(옥외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물통·물뿌리개·도시락 상자·커튼·드레이프(drapes)·테이블 보와 맞춤형 구 먼지방지용 커버[슬립오버(slipover)]

(D) 위생용품과 화장용품(가정용인지 비가정용인지에 상관없다) : 예를 들면, 화장용 세트(침실용 물병·사발 등)·위생 들통(sanitary pail)·변기·소변기·실내용 변기(chamber-pot)·타구·도취캔(douche can)·세안 컵 ; 젓병 꼭지(포유 젓꼭지)와 손가락 보호구 ; 비누컵·수건걸이·칫솔걸이·화장지 홀더·수건 고리와 목욕탕·화장용·주방용으로 건축물의 벽에 영구시설로 하지 않은 유사한 물품. 다만, 건축물의 벽이나 그 밖의 부분에 스크류·못·볼트·접착제 등으로 설치하는 영구시설로 고안된 물품은 제외한다(제3925호).

특수통관 / 장난감 칼 특수통관 관련

일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40cm 길이에 PS, ABS 플라스틱 소재의 장난감 칼을 직구하려고 합니다. 물품 통관이 가능할까요?

해외 직접 구매 시 개인 특수물품의 관세율 및 수입요건, 통관절차 등은 우선 수입물품의 정확한 품목번호(HS Code)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총포·도검 관련 규정을 보면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총포화약법」)」 제9조 제2항에 “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수출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 또는 수입하려는 때마다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조 제2항에 “이 법에서 ‘도검’이란 칼날의 길이가 15센티미터 이상인 칼·검·창·치도(雉刀)·비수 등으로서 성질상 흉기로 쓰이는 것과 칼날의 길이가 15센티미터 미만이라 할지라도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한 것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총포화약법 시행령」 제4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도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도검)

- ① 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검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월도 2. 장도 3. 단도 4. 검 5. 창 6. 치도 7. 비수
 8. 재크나이프(칼날의 길이가 6센티미터 이상의 것에 한한다)
 9. 비출나이프(칼날의 길이가 5.5센티미터 이상이고, 45도 이상 자동으로 펴지는 장치가 있는 것에 한한다)
 10. 그밖의 6센티미터 이상의 칼날이 있는 것으로서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이 있는 도검
- ② 도검의 규격 및 형태는 별표 1과 같다.
- ③ 칼끝이 둥글고 날이 서있지 아니하여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없는 도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검으로 보지 아니한다.

「총포화약법 시행규칙」 제17조에서는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수입 또는 수출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수출입허가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신청인 경찰청장 또는 주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칼날 소재가 플라스틱이고, 칼날이 서있지 않다면, 도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문의하신 물품이 위 도검에 해당하는지 정확한 것은 소관기관(경찰청 서울 생활질서

과 02-700-2974 / 인천 032-455-2347)에서 안내 받기 바랍니다. 해당 소관기관의 확인을 토대로 세관에서 통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FTA / 원산지증명서 선적 후 발급

한·ASEAN에서 선적 후 원산지증명서(CO) 발급기간에 대해 '선적일부터 3근무일'라고 명시돼 있는데, 11월 1일 선적 시 11월 4일까지 발급받아도 되는 의미일까요?

한·ASEAN FTA에서 원산지증명서는 선적 전, 선적 시, 선적 직후(신고 선적일부터 3근무일 이내) 발급돼야 합니다. 이 경우 '선적일부터 3근무일 이내'는 선적일부터 1일을 계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선적일 포함으로 판단되며, 전체적으로 보다 정확한 것은 원산지증명서 발급 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및 관세청 담당 부서(FTA 집행과 042-481-3221)에서 안내 받기 바랍니다.

수입요건 / LED 탁상등의 수입요건

탁상용 LED 조명 제품의 수입요건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관세율표에서 제9405호에는 '조명기구[서치라이트(searchlight)·스포트라이트(spotlight)와 이들의 부분품을 포함하고,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조명용 사인·조명용 네임플레이트(name-plate)와 이와 유사한 물품(광원이 고정되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이들의 부분품(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제9405.2호에 '전기식의 테이블·책상·침대·마루스탠드 조명'을, 제9405.21.0000호에 '발광다이오드(LED) 광원에 전용되도록 설계된 것'을 세분류하고 있습니다.

제9405.21-0000호에 분류되는 LED 탁상등을 수입할 때는 다음과 같은 세관장확인 수입요건을 구비해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요건확인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30V 초과, 1,000V 이하의 교류전원에 사용하는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단, 정격입력이 1.5kw 이하인 것만 해당됨)
 - LED등기구

■ 방송통신기기인증확인서, 「전파법」

-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 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LED등기구

수입신고 수리 후 품목번호 변경에 따른 FTA 세율 배제의 위법성 판단 - 조세심판원 조심2023관0143 (2024. 7. 2) 사건 -

최 천 식 | 관세인재개발원 교수

I. 처분경위

청구법인은 독일 수출자로부터 유리 실험용 주사기(이하 ‘쟁점①물품’이라 한다) 및 플라스틱 실험용 주사기(이하 ‘쟁점②물품’이라 하고, 쟁점①물품과 합해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쟁점①물품 품목번호는 HSK 제8413.91-9000호(이하 ‘제8413호’라 한다)로, 쟁점②물품 품목번호는 제9031.90-9000호(이하 ‘제9031호’라 한다)로 신고한 후 쟁점물품에 대해 한·EU FTA 세율(0%)을 적용해 수입신고했고, 통관지 세관장은 이를 수리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해 관세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물품 품목번호에 오류가 있음을 확인하고 쟁점①물품의 품목번호를 HSK 제7017.90-0000호(기본관세율 8%, 한·EU FTA 협정관세율 0%)(이하 ‘제7017호’라 한다)로, 쟁점②물품의 품목번호를 HSK 제3926.90-9000호(WTO 양허관세율 6.5%, 한·EU FTA 협정관세율 0%)(이하 ‘제3926호’라 한다)로 각각 변경한 후, 한·EU FTA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쟁점물품에 기본관세율 및 WTO 양허관세율을 각각 적용해 2023. 9. 5. 청구법인에게 관세,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경정·고지(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했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해 2023. 11. 21.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II. 당사자 주장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은 쟁점처분 시 청구법인에게 원산지 결정기준에 영향을 미치는 내역이 변경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안내하지 않았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수입신고 시 원산지신고서를 제출하고 한·EU FTA 협정관세율을 적용받았는데, 처분청은 관세조사 결과 쟁점물품 품목번호를 변경한 후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했다. 한·EU FTA에서 원산지신고서에 근거해 특혜관세대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원산지신고서는 상업송장(송품장) 등 상업서류에 원산지신고 문안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원산지신고서에 품목번호나 원산지 결정기준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관세청의 「품목분류번호 해석상이 등에 따른 업무처리 지침」은 우리나라와 협정상대국의

품목번호가 다르거나 원산지증명서상 품명과 송품장상 품명이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 대한 처리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지침 제2호 가목에서 품목번호가 원산지증명서의 필수 항목이 아닌 경우 원산지증명서상 품목번호와 무관하게 협정관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협정관세 사후적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에서도 원산지 증빙서류 오류 등 협정관세 적용 변경으로 인해 협정관세 적용을 재신청하거나 협정관세 적용신청서의 정정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경우 세관장이 원산지 결정기준에 영향을 미치는 내역이 변경됐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물품의 수입신고 내역 등이 변경되더라도 수입물품의 원산지 결정기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경우에는 협정관세 적용신청서를 정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쟁점물품 수입신고 시 원산지신고서를 제출하고 한·EU FTA 세율을 적용받은 건이므로 처분청은 위 지침에 따라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할 것이 아니라 협정관세 적용신청서 정정만으로 처분이 이뤄져야 한다. 그런데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품목번호 변경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에 영향을 미치는 내역이 변경됐는지 여부를 확인하거나 청구법인에게 협정관세 적용신청서를 정정하도록 안내하는 등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채 한·EU FTA 협정세율을 적용을 배제했고, 나아가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쟁점물품에 대해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니 품목번호만 수정해 처분할 것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이를 거부했다.

(2) 쟁점처분은 신의성실원칙 등에 위배된다.

이 건의 경우 과세관청은 위 「품목번호 상이 처리지침」 및 「협정관세 사후적용 처리지침」을 통해 공적인 견해표명을 했고, 청구법인이 이를 신뢰한 데에 귀책사유가 없으며, 청구법인은 품목번호만 수정해 진행할 것을 요청했으므로 위 견해 표명을 신뢰했다고 볼 수 있고, 처분청은 이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청구법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됐는바, 이는 「관세법」 제6조에 위배된다. 한편, 청구법인은 쟁점처분 이후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FTA 관세특례법」)」 제9조 제2항 등에 따라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을 하고자 했으나, 같은 항 단서 규정에 따라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을 할 수 없었는바, 이는 조세형평을 심각하게 훼손해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한 것으로 「관세법」 제5조에 위배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처분은 관세법령에 따른 처분으로서 「FTA 관세특례법」 적용을 위한 위 지침들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쟁점처분은 「관세법」 제38조의3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경정에 의해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로서 「FTA 관세특례법」 적용을 위한 협정관세 사후적용 처리지침이나 품목번호상이 처리지침이 적용되는 경우와는 다르므로 관세법령에 의한 결정까지 위 지침들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없다.

처분청은 관세조사 결과, 쟁점물품의 품목번호 적용 오류를 확인하고 이를 바로 잡은 후 품목번호 변경에 따라 「관세법」 제50조에 규정된 세율 적용의 우선순위에 따라 최종 실행세율을 선택해 쟁점처분을 했고, 쟁점물품의 품목번호 오류에 대해서는 청구법인도 이의가 없다.

쟁점물품의 수입신고 시 각 품목번호에 따른 한·EU FTA 원산지 결정기준은 선택 기준으로서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 중 하나를 선택해 충족하면 됐으나, 쟁점물품의 변경된 각 품목번호에 따른 한·EU FTA 원산지 결정기준은 단일기준으로서 쟁점①물품의 변경된 품목번호(제7017호)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은 4단위 세번변경기준이고, 쟁점②물품의 변경된 품목번호(제3926호)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은 부가가치기준인바, 이와 같이 쟁점물품의 품목번호 변경으로 인해 원산지 결정기준이 ‘선택기준’에서 ‘단일기준’으로 변경됐다는 것은 원산지 충족요건이 강화됐음을 의미한다.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만 변경하고 한·EU FTA 협정관세율을 그대로 적용하려면, 변경된 품목번호에도 한·EU FTA 원산지 결정기준이 충족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가능하나, 이는 관세법령에 따른 관세조사 시 수행할 수 있는 업무 범위가 아니다. 설령 관세조사 시 「FTA 관세특례법」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상대국 수출자의 협조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한·EU FTA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하는 등 장시간이 소요되고 청구법인에게도 과도한 절차가 요구되며, 징수권 확보에도 문제가 발생하므로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더이상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추가 서류 제출 등을 요구하지 않은 채 협정관세율 적용을 배제한 것이다.

(2) 쟁점처분은 신의성실 원칙 등에 위배되지 않는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변경하면서 이 지침들에 따라 한·EU FTA 협정관세율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 이를 배제한 쟁점처분이 신의성실 원칙을 위배했고 과세 형평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한다.

청구법인이 제시한 이 지침들은 수입신고 시 한·EU FTA 협정관세율 적용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거나 협정관세 적용 재신청 및 협정관세 적용신청서의 정정 시 판단에 적용되는 지침들이다. 청구법인은 「FTA 관세특례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을 해 한·EU FTA 협정세율을 사후에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해 처분청에 직권으로 결정해줄 것을 요청했고, 처분청의 과세전통지에 대해 2023. 9. 5. 청구법인

은 조기 경정 신청을 한 후 2023. 9. 20. 경정·고지된 세액을 납부했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적극적으로 쟁점물품 품목번호 변경으로 인한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을 탓하기에 앞서, 「FTA 관세특례법」 제9조 제2항에 대한 스스로의 판단 착오로 인해 처분청에 직권 경정을 요청한 것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므로 쟁점처분이 신의성실 원칙 등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청구법인은 쟁점처분 중 6건에 대해서는 쟁점처분일부부터 45일 이내인 2023. 9. 27. 및 2023. 10. 26. 부산세관장 및 인천공항세관장에게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을 해 이를 각각 승인받았으나, 나머지 쟁점물품에 대해서는 「FTA 관세특례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을 하지 못했다.

III. 쟁점사항

1. 한·EU FTA 협정관세율을 적용받은 쟁점물품에 대해 사후에 품목번호를 변경하면서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한·EU FTA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2. 품목번호 오류를 이유로 한·EU FTA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이 신의성실원칙 등을 위배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IV. 조세심판원 결정요지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한·EU FTA에 따른 협정관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EU 지역에서 우리나라로 직접 운송된 물품으로서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수출자가 발행한 원산지신고서를 갖춰야 하는데, 원산지신고서는 수출자가 상업송장·인도증서 등 상업서류에 원산지신고 문안과 수출자의 서명을 기재해 발행해야 하나, 한·EU FTA상 원산지신고서에 품목번호 및 원산지 결정기준을 기재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물품 수입신고 시 품목번호를 제8413호 및 제9031호로 각각 수입신고하고 쟁점수출자 등이 발행한 원산지신고서를 근거로 한·EU FTA 협정관세율을 적용받았는데, 제출된 원산지신고서에는 원산지 결정기준이 기재돼 있지 않았고, 일부 원산지신고서에는 품목번호가 기재된 경우가 있으며, 원산지신고서에 기재된 품목번호가 수입신고 품목번호와 다른

경우도 있다. 한편, 청구법인이 수입신고 시 제출한 협정관세적용신청서의 '28. 원산지 결정기준'란에는 '세번변경기준' 및 '부가가치기준' 등 구체적인 원산지 결정기준 항목에는 표시돼 있지 않고, 오로지 '자율발급' 항목에만 표시돼 있다.

(다) 처분청이 관세조사 과정이나 쟁점처분 시 청구법인이나 쟁점수출자 등에게 쟁점물품의 원산지 증빙을 위한 서류를 요구하는 등의 원산지 확인을 위한 절차는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법인은 2023. 9. 27. 및 2023. 10. 26. 부산세관장 및 인천공항세관장에게 쟁점물품 중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해당하는 6건에 대해 협정관세 사후신청을 이유로 협정관세 적용신청서 정정을 신청했고, 해당세관장은 2023. 11. 13. 및 2023. 12. 5. 이를 각각 승인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해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 ①에 대해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처분이 관세조사 결과 품목번호 변경에 따라 「관세법」 제50조에서 규정한 세율 적용의 우선순위에 따른 처분이므로 적법하다는 의견인바,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해 품목번호 등을 정정하는 과정에서 변경된 품목번호에 따른 경우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이 명백하다면 「관세법」 제50조에 따른 세율 적용 우선순위를 적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쟁점처분은 당초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적용했던 한·EU FTA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한 것이므로 「FTA 관세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관세법」에 우선해 「FTA 관세특례법」이 적용돼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법인이 당초 수입신고 시 쟁점물품에 대해 쟁점수출자 등이 발행한 원산지신고서를 근거로 한·EU FTA에 따른 협정관세율을 적용받았다면,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한 협정관세율 적용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이 명백하게 확인된 경우가 아닌 이상 「FTA 관세특례법」 제3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해야 할 것이고, 이러한 규정들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는 이상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번호를 수입신고 수리 이후에 변경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한·EU FTA상 원산지신고서에 품목번호나 원산지 결정기준을 기재할 의무가 없고, 청구법인이 쟁점물품 수입신고 시 제출한 원산지신고서나 협정관세 적용신청서에 원산지 결정기준이 기재돼 있지 않아 쟁점물품의 원산지 결정기준이 확인되지 않는바,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수입신고 시 적용했던 품목번호인 제8413호 및 제9031호에 대한 원산지 결정기준은 모두 '세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인데 처분청이 변경한 품목번호(제7017호 및 제3926호)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은 쟁점①물품은 '세번변경기준'이고, 쟁점②물품은 '부가가치기준'으로 위와 같은 처분청의 품목번호 변경만으로는 실제 원산지가 원산지신고서상 기재와 다르다거나 한·EU FTA상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또한 쟁점처분에 이르기까지 처분청은 쟁점물품과 관련한 원산지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을 뿐,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인해 청구법인에 대한 원산지 조사가 불가능했다거나 청구법인이 원산지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등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볼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및 청구법인이 쟁점물품 중 수입신고 수리일 부터 1년 이내에 해당하는 6건에 대해 협정관세 적용신청서 정정을 신청한 것에 대해 부산세관 장 및 인천공항세관장은 이를 각각 승인한 바 있는 점 등에 비취 처분청이 이 건 관세조사 등으로 품목번호를 변경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청구법인의 쟁점물품에 대한 협정관세율 적용에 있어 「FTA 관세특례법」 제3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에 따른 적용 제한사유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변경하면서 한·EU FTA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기본관세율 및 WTO 양허관세율을 적용해 관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쟁점 ①이 인용돼 쟁점 ②는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그 심리를 생략한다.

V. 검토 의견

1. 품목분류에 대해

이번 사건의 쟁점물품 품목분류는 해당기기의 부분품(경우에 따라서는 부속품 포함)으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특계된 단위기기물품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다. 이와 관련해 관세행정 실무상 품목분류 전반적으로 적용되는 주요 쟁점사항을 크게 3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① 가공물품을 원재료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조제품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다. 이는 주로 HS 제5류(기타 동물성 생산품)에서 제21류(기타의 조제식료품)에 분류되는 농축산물 가공제품에서 쟁점이 된다. 여기서 판단기준은 원재료로서의 본질적인 특성(essential character)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다. 즉 원재료로서의 본질적인 특성을 유지한 경우 원칙적으로 원재료 세번에 해당되고 본질적인 특성을 상실한 경우에는 조제품 세번에 해당된다.

② 해당기기의 부분품으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호에 특계된 물품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다. 주로 HS 제84류(기계류), 제85류(전자기기), 제87류(일반차량), 제90류(광학기기, 의료기기, 측정·검사기기)에 해당되는 기계나 기기를 구성하는 각종 부품(component)의 재질에 따라 그 재질 세번과 경합이 된다. 구체적으로 부품 재질이 플라스틱의 경우 HS 제39류(플라스틱과 그 제품), 유리인 경우 제70류(유리), 철제인 경우 제73류(철강제품), 비금속인 경우 제83류(각종 비금속 제품)의 물품과 경합된다.

● 주요 경합 세번 ●

완제품 부분품	재질 세번
제84류 기계의 부분품 세번	제39류 플라스틱 제품
제85류 전자기기의 부분품	제70류 유리제품
제87류 일반차량	제73류 철강 제품
제90류 검사기기	제83류 기타 비금속 제품

이 경우 판단기준은 통칙과 부·류의 주 및 HS 해설서 규정이다. 예를 들어 플라스틱으로 제조된 물리·화학용 분석기기의 부분품이 제90류와 제39류가 쟁점이 될 때 우선적으로 해당 부·류의 주(註) 규정을 살펴봐야 한다. 제39류의 주 제2호(비) 규정에서 제90류의 물품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그 부분품이 제90류에 해당되는지를 우선적으로 살펴봐야 하고 만일 그 부분품이 제90류에 해당되지 않으면 비로소 제39류의 주(註) 또는 호의 규정을 검토해야 한다.

사례를 들면, 제7017호는 실험용·위생용·약제용 유리제품¹⁾의 세번이고 제9027호는 물리·화학분석용 기기 세번이다. 제7017호 해설서에는 “제9027호에 잠재적으로 포함되지만 동시에 이 호의 실험실용 유리제품으로 인정될 수 있는 물리분석이나 화학분석용의 기기 분류에 대하여는 제9027호 해설을 반드시 참조하여야 한다”고 해설하고 있다.

한편 제9027호 HS 해설서에는 “제9027호와 제7017호의 모두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물품 분류는 다음 사항에 의한다. (1) 유리제품의 본질적인 특성(essential character)을 갖춘 것은 눈금 유무나 고무 등으로 만든 부수적인 정지장치·연결 장치 등이 있는지에 상관없이 보통 특정한 기기로 알려진 것이라 할지라도 이 호로 분류하지 않는다. (2) 일반적으로 기기가 일부는 유리로 구성되어 있으나 주로 다른 물질일 경우이거나 유리부분이 프레임·케이스·이와 유사한 물품에 결합하거나 영구적으로 고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유리제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잃은 것으로 본다. (3) 유리제 부품을 압력계·온도계 등의 측정기기와 결합시킨 것은 실제로 이 호에 속하는 기기로 판단하는 기초가 된다. 따라서 단순히 눈금을 매긴 유리제품으로 된 다음과 같은 기기는 제7017호에 해당한다”고 해설하고 있다.

이와 같이 물리·화학분석용 기기를 구성하는 특정의 부품을 분류할 때 재질 세번인 제7017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물리·화학분석용 기기세번인 제9027호의 부분품으로 분류할 것인지는 두 호의 HS 해설서 내용을 참고해야 한다. 이 경우 특정 부품이 유리제품으로서 본질적인 특성(essential character)을 유지하거나, 기타의 압력계 등의 측정기기와 결합되지 않았다면 제7017호로 분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리제품으로서 본질적인 특성을 유지했는지

1) 위생용 유리제품·약제용 유리제품은 전문가의 서비스를 요구하지 않고 일반적인 용도에 사용하는 제품에 적용된다. 그러므로 이 호에는 특히 세척기·노즐·요기·실내용 변기·타구·부향단지·젓 짜는 기구 등이 포함된다(HS 제7017호 해설서 참조).

아니면 상실했는지에 대한 쟁점은 계속 남을 수 있다. 왜냐하면 ‘본질적인 특성’이라는 ‘추상성’ 용어는 관점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인 유리 실험용 주사기를 HSK 제8413.91-9000호로 수입신고했다. 제8413호는 ‘액체펌프와 액체엘리베이터’가 분류되는 호이고 제8413.90호는 그 ‘부분품’이 분류되는 소호다. 유리 실험용 주사기가 액체펌프와 액체엘리베이터와 결합돼 사용된다 하더라도 ‘실험용’이라는 용어에서 알 수 있듯이 실험용 기기들은 주로 제90류로 분류된다. 청구법인은 플라스틱 실험용 주사기를 제90류로 수입신고했다. 따라서 유리 실험용 주사기의 경합세번은 제84류와 제90류보다는 제70류와 제90류가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③ 특정물품이 가진 여러 기능 중 어떤 기능을 주기능(main function)으로 볼 것인지 여부로서 주로 제84류(기계류)와 제85류(전자기기)에 분류되는 복합기계, 다기능기계, 기능단위기기 등에 적용되는 쟁점이다. 대표적으로 스마트폰이나 드론을 예로 들 수 있다. 스마트폰의 경우 문자 작업이나 이메일 전송기능은 제8471호에 해당되고 통신기능은 제8517호에 해당되고 TV 수신기능은 제8528호²⁾에 해당된다. 스마트폰이 세상에 최초로 출시됐을 때 국제적으로 자동자료처리 기계(제8471호)로 분류할지 아니면 무선전화기(제8517호)로 분류할지 이견이 많았다. 결국 WCO HS위원회에서 최종 무선전화기로 결정됐고 이후 WCO는 스마트폰에 대한 특계호 필요성을 인지해 2022년 제8517.13호를 신설하고 스마트폰에 대한 정의를 제85류 주 제5호³⁾에 추가했다.

드론의 경우를 보면 드론 기술은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데, 촬영용, 배달용, 농업용, 탐사용, 오락용에서 최근에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에서 군사용으로 본격적으로 사용되면서 그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2022년 개정 HS에서 제8806호를 신설해 용도에 관계 없이 모든 무인기를 이 호에 분류하도록 했다. 다만, 완구용 드론은 완구류가 분류되는 제9503호⁴⁾에 분류하도록 했다. 2022년 이전의 HS에서 드론은 기능과 용도에 따라 각기 달리 분류했다. 오락용으로 제작된 것은 제9503호의 완구류로, 운반 목적으로 제작된 것은 제8802호의 항공기로, 고성능 카메라를 탑재해 촬영 목적으로 제작된 것은 제8525호의 카메라로 분류했다.

이번 사건의 쟁점물품은 ②의 사례에 해당된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해당 기계나 기기의 부분품으로 봐, 유리 실험용 주사기를 제8413호로, 플라스틱 실험용 주사기를 제9031호로 신고했다. 반면 처분청은 특계된(specified) 재질세번으로 분류돼야 한다고 판단해 유리 실험용 주사기를 제7017호로, 플라스틱 실험용 주사기를 제3926호로 분류했다. 일반적으로 특정 부품

2) 2008년도 독일세관은 삼성 DMB폰에 대해 TV 기능을 주기능으로 봐 제8528호(관세 14%)로 분류한 바 있다.

3) 제8517호에서 ‘스마트폰’이란 “자동자료처리기계의 기능(예 : 제3자 애플리케이션을 포함한 다수의 응용프로그램을 설치하여 동시에 실행)을 수행하도록 만든 휴대기기용 운영체제를 갖춘 셀룰러 통신망용 전화기를 말한다(디지털 카메라나 내비게이션 시스템 등 다른 기능을 장착했는지에 상관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4) 제9503호에 분류되는 드론의 경우 저중량, 고도제한, 비행가능 거리나 시간, 최대 속도, 자율비행 기능이 없는 점, 화물 수송능력이 없는 점으로 제8806호에 분류되는 드론과 구별된다.

(component)을 기계의 부분품(part)으로 사용하기 위해 수입하는 경우 그 기계의 부분품으로 분류하기 쉬운데 이번 사건과 같이 경우에 따라서는 특계된 재질세번으로 분류될 수 있음을 특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2. 한·EU FTA 적용 여부에 대해

이번 사건은 청구법인이 수입신고 시 한·EU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은 품목번호에 대해 처분청이 사후 관세심사 결과에 따라 다른 HS 번호로 정정하고 「관세법」 제38조의3 제6항에 따라 추징고지한 사건이다. 해당 추정처분이 적법성이 있는지 여부는 두 가지 관점 즉,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첫째, 절차적 요건으로 수입신고 수리 후에 처분청이 정정한 HS 번호에 대해서도 협정이나 「FTA 관세특례법」에서 정한 한·EU FTA세율을 사후 적용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했는지 여부다. 둘째, 실체적 요건으로 처분청이 정정한 HS 번호에 대해서도 쟁점물품이 여전히 원산지 지위를 획득하고 있는지 여부다.

우선 절차적 요건을 살펴보면, 「FTA 관세특례법」 제9조(협정관세 사후적용의 신청) 제2항에서 “수입자는 세관장이 수입자가 신고한 품목분류와 다른 품목분류를 적용하여 「관세법」 제38조의3 제6항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협정관세의 사후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세관장은 해당 규정에 따라 수입자가 제출한 서류를 심사해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수입물품이 해당 협정, 법령 등에서 정한 협정관세 적용 요건을 충족함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협정관세 적용신청 정정을 승인할 수 있다.

또한 관세청 지침인 「협정관세 사후적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2021. 3. 18) 3-1에서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물품에 대해 세관장이 수입자가 신고한 HS 번호와 다른 HS 번호를 적용한 결과, 원산지증명서 HS 번호의 원산지 결정기준이 변경된 HS 번호의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충족 여부가 곤란한 경우, 수입자는 원산지증명서를 포함한 관련 증빙서류를 보완·첨부해 협정관세 적용 내역 정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변경된 HS 번호로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된 HS 번호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관세청 지침 「품목분류번호 해석 상이 등에 따른 업무처리 지침」을 참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련규정을 볼 때 FTA 협정세율 사후 적용신청규정은 수입신고 전에 반드시 감면신청을 해야 하는 강행규정인 관세감면신청제도와 달리, 수입신고 수리 후에도 신청할 수 있는 임의규정으로 볼 수 있다. 임의규정으로 분류되는 이상 처분청은 정정한 HS 번호에 따라 쟁점물품이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를 내부 검토하거나 청구법인에게 원산지 증빙서류를 보완 요구해야 한다.

이번 사건으로 되돌아와 살펴보면, 처분청은 ① 한·EU FTA 원산지 결정기준이 충족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가능하나, 이는 관세법령에 따른 관세조사 시 수행할 수 있는 업무 범위가 아니며, ② 설령 관세조사 시 「FTA 관세특례법」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상대국 수출자의 협조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한·EU FTA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하는 등 장시간이 소요되고 청구법인에게도 과도한 절차가 요구되며, 징수권 확보에도 문제가 발생하므로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더이상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추가서류 제출 등을 요구하지 않은 채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청구법인은 처분청에 쟁점물품에 대해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므로 품목번호만 수정해 처분할 것을 요청했고 처분청은 이를 거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FTA 관세특례법」 제9조 제2항 및 「협정관세 사후적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3-1은 원칙적으로 세관장이 수입자가 신고한 품목분류와 다른 품목분류를 적용해 「관세법」 제38조의3 제6항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수입자는 원산지증명서를 포함한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 협정관세 적용 내역 정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처분청이 단지 관세조사 영역 밖의 업무 또는 FTA 사후검증에 따른 과도한 부담 등의 이유로 수입자가 행사할 수 있는 FTA협정관세 사후 정정신청권을 무력화해서는 곤란하다.

즉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요청한 대로 쟁점물품이 정정된 HS 번호에 대해서도 여전히 한·EU FTA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내부 검토 또는 필요 시 청구법인에게 추가 증빙서류 요청을 통해 심사해야 하는 것이다.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원산지 소명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은 절차적 요건에 위배된다. 이 외에도 처분청이 FTA 사후검증은 관세법령에 따른 관세조사 시 수행할 수 있는 업무 범위가 아니라고 하지만 이는 관세청 내부 조직의 업무 관할 범위와 관련된 것으로 「관세법」 제110조의2(통합조사의 원칙)에 따라 쟁점물품의 품목분류 적정성 심사뿐만 아니라 한·EU FTA세율을 받을 수 있는지의 원산지검증도 세액의 적정성 심사 대상으로 귀결되므로 통합조사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본부세관 심사부서에서 수행하는 통관적법성 심사 분야는 과세가격, 외환, 품목분류, 환급, 감면, 원산지⁵⁾, 지재권, 통관요건 등 8가지가 있다. 8대 통관적법성 심사사항에 대해서는 관세청 「기업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에 자세히 나와 있다. 해당 훈령 제9조(심사분야) 제1항 제7호에 ‘원산지 또는 협정관세 적용 및 증빙서류에 관한 사항(「FTA 관세특례법」 제17조에 따른 원산지에 관한 조사는 제외한다)’는 심사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쟁점물품이 한·EU FTA협정세율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는 8대 통관적법성 심사분야다. 따라서 처분청 심사부서에서 비록 다른 HS 번호 역시 FTA 협정세율 적용인지 여부의 판단은 8대 통관적법성 심사분야로서 자체 판단하면 된다. 다만, 쟁점물품의 신고세번이 다른 HS 번호로 변경됨에 따라 원산지 지위를

5) 원산지는 「관세법」과 「대외무역법」에 따른 물품의 원산지 적정표시 여부, 덤핑방지관세 등 비특혜원산지를 말한다.

상실했는지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FTA원산지조사부서에 의뢰하면 된다.

다음으로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정정한 HS 번호를 적용하더라도 여전히 원산지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지의 실체적 요건을 살펴본다. 쟁점물품이 한·EU FTA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원산지 지위를 획득하고 있으면 「관세법」 제50조에 따른 세율 적용 우선순위에 따라 기본세율(7순위)보다 FTA세율(2순위)을 우선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수입자가 신고한 HS 번호와 처분청이 정정한 HS 번호의 원산지 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 한·EU FTA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 ●

물품	수입자의 신고 세번	세관장의 정정 세번
유리 주사기	HS 제8413호 - 세번변경기준(CTH) - 부가가치기준 (비원산지 50% 이하)	HS 제7013호 - 세번변경기준(CTH)
플라스틱 주사기	HS 제9031호 - 세번변경기준(CTH) - 부가가치기준 (비원산지 50% 이하)	HS 제3926호 - 부가가치기준 (비원산지 50% 이하)

한·EU FTA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원산지신고 문안을 기재하는 자율발급 형태의 FTA이며 원산지증명서는 정형화된 서식이 있는 것이 아니다. 원산지신고 내용⁶⁾을 상업송장, 인도증서 또는 그 밖의 상업서류에 기재하고 장소 및 날짜와 수출자의 이름을 적고 서명을 하면 된다. 한·EU FTA 원산지증명서는 HS 번호와 원산지 결정기준이 기재되지 않는다. 따라서 EU 수출자가 쟁점물품에 대해 세번변경기준을 적용했는지 아니면 부가가치기준을 적용했는지는 알 수 없다.

「FTA 관세특례법」 제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라 수입자가 한·EU FTA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쟁점물품 수입 당시 ‘협정관세적용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해당 신청서 (28)항목에 원산지 결정기준이 나와 있고 수입자는 원산지 결정기준 중 하나에 체크해야 한다. 청구법인이 신고한 HS 번호의 원산지 결정기준은 세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 중 선택기준으로 돼 있는 반면, 처분청이 정정한 HS 번호의 원산지 결정기준은 단일기준으로 돼 있다.⁷⁾

6) The exporter of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origin of products) preferential origin.

7) 한·EU FTA에서는 그동안 EU가 다른 국가와 체결한 FTA에서 견지해 온 엄격한 결합기준원칙(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을 동시에 충족) 대신 처음으로 선택기준(세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 중 하나만 충족)을 채택했다.

만일 청구법인이 '협정관세적용신청서' (28)항목 원산지 결정기준에 세번변경기준에 체크했고 처분청이 정정한 HS 번호의 원산지 결정기준 역시 세번변경기준인 경우 EU 내에서 주요 제조공정이 발생하고 그 과정에서 4단위 세번변경이 이뤄지므로 쟁점물품은 여전히 원산지 지위를 획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경우 처분청은 별도의 보완서류 징구 필요 없이 수입신고서 품목번호만 정정하면 된다. 그러나 처분청이 정정한 HS 번호의 원산지 결정기준이 부가가치 기준이라고 한다면 쟁점물품에 대해 원산지 지위를 부여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때는 처분청(FTA원산지조사부서)은 청구법인에게 원산지 증빙서류를 보완 요청해 심사해야 한다. 처분청이 보완 제출받은 서류를 심사한 결과, 쟁점물품이 해당 협정 및 법령 등에서 정한 협정관세 적용 요건을 충족함이 인정되는 경우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있다. 반면 청구법인이 세관장의 자료제출 및 보완요구 등을 이행하지 않거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로 해당 협정과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면 이때서야 비로소 협정관세를 배제하고 「관세법」 제38조의3 제6항 규정에 따른 경정고지 절차를 이행하면 된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협정관세적용신청서' (28)항목 원산지 결정기준에 자율발급항목을 체크했다. 자율발급은 원산지증명 물품으로 수입자가 원산지 결정기준을 알 수 없는 경우에 자율발급에 √를 표시하는 방법이다. 한편, 「품목분류번호 해석 상이 등에 따른 지침」 II. 업무처리 지침 (2)에서 HS 번호가 원산지증명서의 필수항목이 아닌 경우에는 HS 번호가 원산지증명 항목이 아니므로 원산지증명서상의 HS 번호와 무관하게 협정관세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물품의 원산지증명서 위조 혐의 등 원산지검증을 해야 할 특이한 사유가 발견되지 않는다면 같은 지침에 따라 HS 번호가 정정되더라도 원산지지위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더욱이 부산세관장 및 인천공항세관장이 FTA 협정세율 사후적용 신청을 승인한 점도 과세 일관성 차원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품목번호 변경으로 인해 원산지 결정기준이 '선택기준'에서 '단일기준'으로 변경됐다는 것은 원산지 충족 요건이 강화됐음을 주장하지만 그 강화된 원산지 충족 요건은 쟁점물품이 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다는 필요 요건으로 볼 수는 없다.

VI. 맺는 말

세관장이 관세 사후심사과정에서 수입자가 신고한 HS 번호에 오류를 발견하고 올바른 HS 번호로 정정하려고 했으나 관세율이 같은 경우가 있다. 이때 기존 신고납부한 세액을 정정하는 방법은 2가지가 있다. 첫째는 기존에 납부한 세액을 환급해주고 다시 정정된 HS 번호로 추징하는 방법이다. 이 경우 가산세는 신고 당시 부족한 세액이 없으므로 발생하지 않는다. 둘째는 세액의 환급·추징절차 없이 단지 품목번호만 정정하는 방법이다. 행정 효율성 측면에서는 두

번째 방법이 좋을 것이다.

이번 사건도 쟁점물품이 청구법인이 신고한 HS 번호와 처분청이 정정한 HS 번호 모두 한·EU FTA 협정세율이 대상이라고 한다면 추정했다가 환급하는 것은 불필요한 행정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해 비록 청구법인이 신고한 HS 번호에 오류를 발견했다 하더라도 곧바로 「관세법」 제38조의3 제6항에 따라 경정고지처분을 할 것이 아니라 「관세법」 제50조에 따른 세율우선순위에 따라 정정한 HS 번호 역시 한·EU FTA 협정세율을 받을 수 있는지를 내부 검토하거나 필요 시 청구법인에게 원산지 증빙서류를 보완 요청해 심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설사 추정처분이 선행됐다 하더라도 임의규정인 FTA 협정세율 사후신청제도가 엄연히 존재하는 한, 수입자는 추정당한 세액에 대해 FTA 협정세율 사후적용 신청을 할 수 있고 해당 물품이 FTA 협정세율에 해당된다고 하면 세관장은 환급을 거부할 명분이 없다. 이러한 불필요한 추정·환급절차는 관세행정에 번거로움만 초래할 뿐이다.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해 품목번호 등을 정정하는 과정에서 변경된 품목번호에 따라 경우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만 비로소 「관세법」 제38조의3 제6항에 따라 추정처분이 가능하다.

제8403호[중앙난방용 보일러(제8402호의 것은 제외한다)] 해설 및 쟁점사항 연구

김 명 섭 | 인천세관 FTA검증1과장

[해설 요지]

제8403호에는 보일러 중 제8402호의 ‘증기발생보일러와 과열수보일러’를 제외한 ‘중앙난방용 보일러(Central heating boilers)’가 분류된다. 이 호에는 여러 가지의 중앙난방용 보일러가 포함되나 제7321호의 스토브(stove)처럼 비기계식의 보일러와 중앙난방용 증기발생보일러(제8402호)는 제외한다.

진공온수보일러, 무압온수보일러 등 온수보일러(hot water boiler)는 100℃ 이하의 온수(보통 80℃)만 제공하므로 비록 저압증기를 발생할 수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이 호로 분류한다.

이 호에 포함되는 주요한 품목으로는 진공온수보일러, 무압식 온수보일러, 전기식 중앙난방보일러, 가스식 중앙난방보일러, 기름(중유)식 중앙난방보일러 등이 있다.

[주요 쟁점사항]

보일러는 밀폐된 여러 가지 모양의 금속제 용기에 물을 넣고 가열해 수증기 또는 온수를 발생시키는 장치로 물은 대기압에서 100℃를 기화점으로 액체에서 기체로 변한다. 이를 근거로 제8402호에는 증기보일러가 분류되고 제8403호에는 온수보일러가 분류되므로 제8402호와 제8403호의 구분 요소는 온도와 압력이다.

증기보일러와 온수보일러는 사용하는 연료나 외관, 부속기기 등 차이가 거의 없다. 중앙난방을 목적으로 하는 보일러의 경우 증기를 발생시켜 난방을 하기 위한 것은 제8402호로 분류하고 증기 발생 없이 온수와 난방을 공급하는 보일러는 제8403호로 분류한다.

다만 일반적으로 개별난방, 중앙난방, 지역난방으로 구분하는 경우가 있는데 분류에 있어서는 중앙난방이나 지역난방의 경우 증기를 발생시켜 난방을 공급하는 시스템이 일반적이므로 제8402호로 분류될 가능성이 크다. 반면 개별난방의 경우 급탕이나 온수를 각각의 공간에 공급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제8403호로 분류될 가능성이 크다.

부분품으로 분류되는 튜브, 관과 재질에 따라 분류하는 관의 구분점으로 관세율표 전반에 걸쳐 튜브와 관은 재질에 따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최대한 튜브와 관의 범주를 넓게 해석해 재질에 따라 분류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① 두 개 이상의 재질로 구성된 관과 파이프의 조합품(예 : 플라스틱제의 관과 금속제의 관이 결합돼 제시된 경우, 철강제의 관과 동제의 관이 결합돼 제시된 경우), ② 관과 관의 조립체(예 : 수관보일러용 수관 조립품), ③ 관의 형태를 가지고 있으나 관의 정의를 벗어난 관의 가공품(예 : 관의 횡단면의 내측과 외측이 동심(同心)이 아니고 동일한 모양과 방향성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경우), ④ 관에 관의 연결구류가 아닌 제90류 제품(예 : 압력계, 액면계, 온도계 등)이나 탭(tap), 코크(cock), 밸브(valve), 개스킷(gasket)과 이와 유사한 조인트(joint)의 조합품, ⑤ 특정 물품으로 인정될 수 있게 제조한 관(예 : 구조물용 관)의 경우 재질에 따라 분류하지 않고 부분품이나 해당 호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제84류와 제85류 제품을 구별할 수 있는 기준으로는 ① 전기의 특성이나 효과[예 : 전기저항(도체, 부도체, 반도체), 전기에너지의 변환(빛, 소리, 열, 자력, 전파 등), 전기의 발생·이동·저장·소멸(발전기, 전기회로, 전지)]을 이용하는 것과 가정용 전기기기는 제85류에 분류하고, ② 전기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전기 기계식의 기기와 가정용이라 할지라도 발명 초기부터 산업용으로 개발된 기기(예 : 냉장고와 냉동고, 접시세척기, 세탁기, 계산기, 컴퓨터, 에어컨, 선풍기 등)은 제84류로 분류한다.

제8402호와 제8403호 해설서에 “전기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증기발생보일러와 전기식 중앙난방보일러를 포함한다”고 해설하고 있는 이유다.

제8403호의 보일러는 사용 연료나 외관이 대동소이하므로 제8402호의 보일러처럼 제8416호 ‘노(爐)용 버너’, 제8419호 ‘온도 변화에 따른 방법으로 재료를 처리하는 기계·설비’, 제8481호 ‘증기나 온수용 탭과 콕’, 제8516호 ‘전기식의 즉시식·저장식 물 가열기와 투입식 가열기, 난방기기’와 경합이 되므로 유의한다.

I. 분류 체계

■ 호의 구성

제8403호에는 보일러 중 제8402호의 ‘증기발생보일러와 과열수보일러’를 제외한 중앙난방용 보일러(Central heating boilers)가 분류된다. 이 호에는 여러 가지의 중앙난방용 보일러가 포함되나 제7321호의 스토브(stove)처럼 비기계식의 보일러와 중앙난방용 증기발생보일러(제8402호)는 제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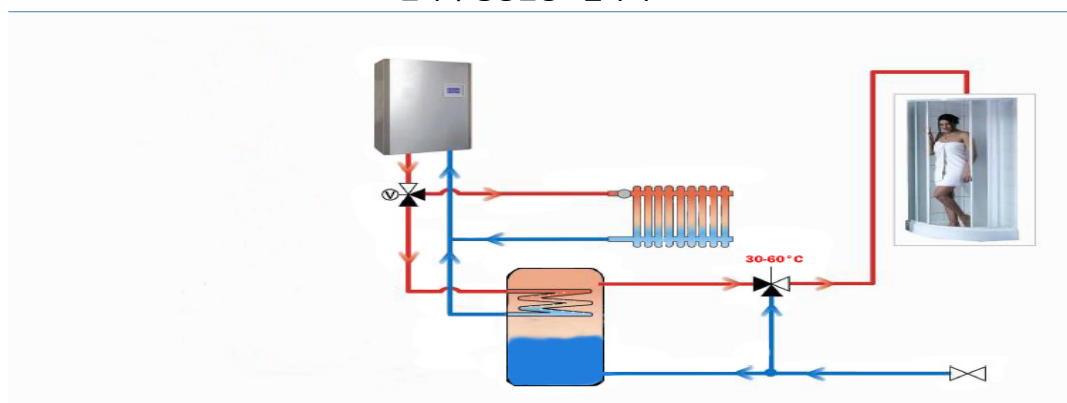
중앙난방용 보일러는 사용하는 연료의 종류에 따라 나무 보일러, 석탄 보일러, 코크스 보일러, 가스 보일러, 중유 보일러, 전기식 보일러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연료를 연소해 가열한 물을 순환시킴으로써 가정·바닥·공장·작업소·온실 등의 온도를 높이는 데 사용한다.

중앙난방용 보일러는 안전을 위해 온도계·압력조절기와 압력계·액면계·탭(tap)·콕(cock)·버너(burner)와 이와 유사한 부분품이나 부속품이 부착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제16부 주 제3호나 제4호를 적용해 제8403호로 같이 분류한다. 다만 부속품이 별도로 제시되는 경우에는 제84류, 제90류 등 해당 호로 분류한다.

진공온수보일러, 무압온수보일러 등 온수보일러(hot water boiler)는 100℃ 이하의 온수(보통 80℃)만 제공하므로 비록 저압증기를 발생할 수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이 호로 분류한다.

이 호에 포함되는 주요한 품목으로는 진공온수보일러, 무압식 온수보일러, 전기식 중앙난방보일러, 가스식 중앙난방보일러, 기름(중유)식 중앙난방보일러, 석탄식 중앙난방보일러, 코크스식 중앙난방보일러 등이 있다.

■ 제8403호의 다양한 기기



■ 제8403 소호의 구성

제8403 소호는 호의 용어를 그대로 인용해 ① 제8402호의 것을 제외한 중앙난방용 보일러와 ② 부분품을 소호에 규정한 총 2개 소호로 구성돼 있다.

소호의 용어를 간단히 구별하면 다음과 같다.

- 제8403.10 - 제8402호의 것을 제외한 중앙난방용 보일러
- 제8403.90 - 부분품

■ 제8403호 HSK의 구성

HSK는 제8403.10 소호의 중앙난방용 보일러를 연료의 종류에 따라 ① 유류용, ② 가스용, ③ 그 밖의 연료용으로 세분화했다.

II. 관련 규정

제8403호의 ‘중앙난방용 보일러(제8402호의 것은 제외한다)’를 분류하기 위한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다.

■ 제16부 주 제2호

기계의 부분품(제8484호·제8544호·제8545호·제8546호·제8547호의 물품의 부분품은 제외한다)은 이 부의 주 제1호, 제84류의 주 제1호, 제85류의 주 제1호에 규정한 것 외에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한다.

… < 중략 > …

나.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로 분류한다. 다만, 주로 제8517호와 제8525호부터 제8528호까지의 물품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제8517호로 분류하고, 제8524호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제8529호에 분류한다.

■ 제16부 주 제3호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그 밖의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이나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한다.

■ 제16부 주 제4호

하나의 기계(여러 종류의 기계가 조합된 것을 포함한다)가 각종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따로 분리되어 있는지 또는 배관·전동장치·전력케이블이나 그 밖의 장치로 상호 연결되어 있는지에 상관 없다) 이들이 제84류나 제85류 중의 어느 호에 명백하게 규정된 기능을 함께 수행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그 전부를 그 기능에 따라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

■ 제16부 주 제5호

이 부의 주에서 '기계'란 제84류나 제85류에 열거된 각종 기계·기계류·설비·장비·장치·기기를 말한다.

■ 제84류 주 제2호

제16부의 주 제3호나 이 류의 주 제11호에 따라 적용될 호가 정하여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8401호부터 제8424호까지와 제8486호의 하나 이상의 호에 해당하는 기기가 동시에 제8425호부터 제8480호까지의 하나 이상의 호에도 해당되는 경우, 이 기기는 제8401호부터 제8424호까지의 적합한 호로 분류하거나 경우에 따라 제8486호로 분류하고, 제8425호부터 제8480호까지에는 분류하지 않는다.

■ 제7321호의 용어

철강으로 만든 스토브(stove)·레인지(range)·불판·조리기(중앙난방용 보조보일러를 갖춘 것을 포함한다)·바비큐(barbecue)·화로·가스풍로·가열판과 이와 유사한 비전기식 가정용 기구와 이들의 부분품

■ 제7322호의 용어

철강으로 만든 방열기(중앙난방용으로 한정하고, 전기가열식은 제외한다)와 이들의 부분품, 동력구동식 송풍기를 갖춘 공기가열기와 온풍배분기와 이들의 부분품

■ 제8402호의 용어

증기발생보일러(저압증기도 발생시킬 수 있는 중앙난방용 온수보일러는 제외한다)와 과열수보일러(super-heated water boiler)

■ 제8404호의 용어

제8402호나 제8403호의 보일러용 부속기기(예 : 연료절약기·과열기·그을음제거기·가스회수기)와 증기원동기용 응축기

■ 제8419호의 용어

가열·조리·배소(焙燒)·증류·정류·살균·저온살균·증기가열·건조·증발·응축·냉각과 그 밖의 온도 변화에 따른 방법으로 재료를 처리하는 기계·설비·실험실 장치{전기가열식[제8514호의 노(爐)]와 오븐과 그 밖의 장비는 제외한다, 실험실용을 포함하며 일반적으로 가정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와 전기가열식이 아닌 즉시식이나 저장식 물 가열기

■ 제8516호의 용어

전기식의 즉시식·저장식 물 가열기와 투입식 가열기, 난방기기와 토양가열기, 전기가열식 이용기기[예 : 헤어드라이어·헤어컬러(hair curler)·컬링통히터(curling tong heater)], 손 건조기, 전기다리미, 그 밖의 가정용 전열기기, 전열용 저장체(제8545호의 것은 제외한다)

III. 주요 쟁점사항

제8403호의 분류와 관련해 주요 쟁점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제8402호와 제8403호의 구분은?
- 2) 부분품으로 분류되는 튜브, 관과 재질에 따라 분류하는 관의 구분점은?
- 3) 전기식 기기(예 : 전기식 보일러)에 대한 제84류와 제85류의 분류 기준은?
- 4) 제8403호와 경합되는 그 밖의 물품들은?

1) 제8402호와 제8403호의 구분은?

보일러는 밀폐된 여러 가지 모양의 금속제 용기 내에 물을 넣고 가열해 수증기 또는 온수를 발생시키는 장치로 물은 대기압에서 100℃를 기화점으로 액체에서 기체로 변한다. 이를 근거로 제8402호에는 증기보일러가 분류되고 제8403호에는 온수보일러가 분류된다.

제8402호의 증기발생보일러의 경우, 증기는 많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으므로 원동기를 구동시키거나 다양한 용도의 기계에 증기를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작된다. 증기에 더 많은 에너지를 담기 위해 가압이 필요하며 폭발할 위험이 있다. 이로 인해 출력이나 효율을 증대하고 안전을 위한 제어장치 등 광범위한 부속기기가 필요한 경우가 많다.

반면 제8403호의 보일러의 경우, 증기가 아닌 온수 발생을 목적으로 한다. 이 온수를 순환해 가정이나 사무실, 공장, 작업장, 온실에 난방을 공급한다. 즉 온수(급탕)와 난방을 목적으로 한다. 간혹 열량이 많아 저압 상태에서 증기가 발생한다고 해도 증기 발생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므로 제8402호에서 제외해 제8403호로 분류한다. 온수 및 난방보일러는 100℃ 미만(보통 최대 80℃)의 온수를 발생시키는 것이 목적이지만, 위험의 요소가 있으므로 압력계·온도계·액면계와 같은 부속기기가 결합돼 있다.

그러나 증기보일러와 온수보일러는 사용하는 연료나 외관, 부속기기 등 차이가 거의 없다. 특히 주철제섹션보일러의 경우 외관상 구분되지 않지만, 증기보일러도 있고 온수 및 난방용 보일러도 있다.

중앙난방을 목적으로 하는 보일러의 경우 증기를 발생시켜 난방을 하기 위한 것은 제8402호로 분류하고 증기 발생 없이 온수와 난방을 공급하는 보일러는 제8403호로 분류한다.

또한 일반적으로 개별난방, 중앙난방, 지역난방으로 구분하는 경우가 있는데 분류에 있어서는 중앙난방이나 지역난방의 경우 증기를 발생시켜 난방을 공급하는 시스템이 보통이므로 제8402호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 개별난방의 경우 급탕이나 온수를 각각의 공간에 공급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제8403호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다.

요약하자면 제8402호와 제8403호의 구분 요소로 온도와 압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2) 부분품으로 분류되는 튜브, 관과 재질에 따라 분류하는 관의 구분점은?

제16부 주 제1호 아목에 ‘드릴파이프(drill pipe)’를 제16부에서 제외해 재질에 따라 제7304호로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3917호의 용어에 ‘플라스틱의 관·파이프·호스’를, 제4009호의 용어에 ‘고무로 만든 관·파이프·호스’를, 제15부(비금속과 그 제품)의 제7304호부터 제7306까지의 용어에 ‘철강제의 다양한 관’을 비롯해 튜브와 관은 재질에 따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제15부 주 제9호 마목에 관(Tubes and pipes)에 대해 “관(管)이란 전체 길이에 걸쳐 하나의 중공(中空)을 가지는 제품으로서 코일 모양인지에 상관없고 그 횡단면이 균일하며, 원형·타원형·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정삼각형·볼록정다각형 모양으로서 그 벽의 두께가 균일한 것을 말한다. 횡단면이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정삼각형·볼록정다각형인 물품은 전체 길이를 통하여 모서리가 둥근 모양일 수도 있는데, 횡단면의 내측과 외측이 동심(同心)이고 동일한 모양과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관(管)으로 본다. 위와 같은 횡단면을 가진 관(管)들은 연마한 것, 도포한 것, 구부린 것, 나선가공한 것, 구멍을 뚫은 것, 웨이스트한(waisted) 것, 익스팬디드한(expanded) 것, 원추형으로 한 것, 플랜지(flange)·고리·링을 붙인 것도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관은 최대한 재질에 따라 분류해야 한다.

반면 제8402호와 제8404호 해설서에 “구부림(bent or curved) 이상의 가공을 하지 않은 금속으로 만든 튜브(tube)나 관(pipe)이 조립되지 않은 상태로 제시될 경우 보일러의 부분품으로 인정되지 않고 제15부에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고

제8403호 해설서에는 “중앙난방용 보일러와 방열기를 접속하기 위한 관(pipe)과 연결구류(fittings)(일반적으로 제7303호부터 제7307호까지)”는 부분품으로 분류하지 않는다고 해설하고 있다.

이를 원론적으로 정리하자면 관(Tubes and pipes)은 “연마한 것, 도포한 것, 구부린 것, 나선가공한 것, 구멍을 뚫은 것, 웨이스트한(waisted) 것, 익스팬디드한(expanded) 것, 원추형으로 한 것, 플랜지(flange)·고리·링을 붙인 것, 용접한 것”은 재질에 따라 분류하나 “그 이상의 가공”을 한 것은 부분품으로 분류한다는 취지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제8402호에 보일러의 내부조립품(관의 조립체로 구성된 것)를 부분품으로 예시하고 있으나 실제에서 “그 이상의 가공”을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대한 기준은 없다.

이에 대해 필자의 견해로는 ① 두 개 이상의 재질로 구성된 관과 파이프의 조립품(예 : 플라스

틱제의 관과 금속제의 관이 결합돼 제시된 경우, 철강제의 관과 동제의 관이 결합돼 제시된 경우), ② 관과 관의 조립체(예 : 수관보일러용 수관 조립품), ③ 관의 형태를 가지고 있으나 관의 정의를 벗어난 관의 가공품[예 : 관의 횡단면의 내측과 외측이 동심(同心)이 아니고 동일한 모양과 방향성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경우], ④ 관에 관의 연결구류가 아닌 제90류 제품(예 : 압력계, 액면계, 온도계 등)이나 탭(tap), 코크(cock), 밸브(valve), 개스킷과 이와 유사한 조인트(joint)의 결합품, ⑤ 특정 물품으로 인정될 수 있게 제조한 관(예 : 구조물용 관)의 경우 재질에 따라 분류하지 않고 부분품이나 해당 호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튜브가 결합된 난방보일러의 부분품에 대한 분류 사례 ●

시행기관	2016년 제2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공개 여부	공개
결정 세번	제8403.90-0000호
경합 세번	제8403.90-0000호, 제8404.10-9000호, 제8419.89-9010호

○ 개요

가정형의 난방용 보일러 내부에 장착되어 난방수를 가열하기 위한 물품으로 난방수가 유입되는 입구, 가열된 난방수가 배출되는 토출구 및 난방수가 순환하는 튜브가 형성돼 있는 Box 형상의 비금속제 물품.

버너에서 가열된 뜨거운 공기는 현열 열교환기, 잠열 회수 응축기를 거쳐 외부로 배출되며, 난방수는 잠열 회수 응축기에서 1차 가열되고 현열 열교환기에서 고온으로 가열돼 순환.

물품 설명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는 “기계의 부분품으로서 제84류 또는 제85류의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부분품은 해당 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건 물품이 제84류 및 제85류의 특정한 호에 분류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함.

결정 사유

관세율표 제8419호에는 ‘가열 등 온도 변화에 따른 방법으로 재료를 처리하는 기계’가 분류되고, 제8419.50 소호에는 ‘열교환기’가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 ‘열교환장치’를 “열류(熱流) 및 저온의 유체(流體)가 얇은 금속벽으로 분리된 평행한 유로(parallel path)를 보통 반대 방향으로 흘려 한쪽은 냉각되고 다른 한쪽은 가열되는 장치”라고 설명하고 있는 바,

본건 물품은 버너의 불꽃 또는 그 잠열이 차가운 유체가 흐르는 튜브를 직접 가열해 난방수를 고온으로 만드는 물품이므로 열교환기로 볼 수 없음.

또한 관세율표 제8404호에는 ‘제8402호 또는 제8403호의 보일러용 부속기기(예 : 연료절약기·과열기·그을음제거기·가스회수기)’가 분류되는 바,

통상 ‘부속기기’라 함은 해당 기기 본연의 작업에 관여하거나 해당 기기의 기능과 조작에 필수 불가결한 요소를 구성하지 않는 것으로, 기계의 작동 범위와 효율을 증가시키기 위한 보조적인

기기에 해당하므로,
보일러의 기능(난방수의 가열 및 순환)에 필수 불가결한 본건 물품은 제8404호의 '보일러용 부속기기'에 분류할 수 없음.

관세율표 제8403호에는 '중앙난방용의 보일러'가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에 의하여 이 호에는 또한 보일러 튜브·보일러 케이싱·벽·도어 및 맨홀 또는 검사 port 커버 등과 같은 중앙난방보일러의 부분품으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따라서 본건 물품은 보일러의 작동에 필수 불가결한 물품이므로 '보일러의 부분품'으로 봐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03.90-0000호로 분류함.

3) 전기식 기기(예 : 전기식 보일러)에 대한 제84류와 제85류의 분류 기준은?

제84류에는 일반적으로 '기계류'가 분류되고 제85류에는 '전기기기'가 분류된다. 그러나 제84류 총설에 "일반적으로 제84류에는 기계류와 기계식 장치가 포함되고 제85류에는 전기기기를 포함한다. 그러나 특정의 기계는 제85류의 각 호에 특별히 포함되어 있고(예 : 전자기계식 가정용 기기), 반면에 제84류에는 특정의 비기계식 장치가 포함되어 있다(예 : 증기발생보일러와 그 부속기기와 여과기 등). 제84류에 포함되는 종류의 기계류와 장치가 비록 전기식의 것이라 할지라도 제84류에 분류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고 해설하고 있다.

제85류 총설에는 "전기기기일지라도 그것이 제84류에 포함되는 종류의 기계류인 경우에는 제84류에 분류한다. ... <중략> ... 일반적으로 전기가열식의 기기는 다른 류(주로 제84류)에 분류한다. 예를 들면, 증기발생보일러와 과열수보일러(제8402호)"라고 해설하고 있다.

물론 제8402호와 제8403호 해설서에 "증기발생보일러는 전기로 가열될 수 있다", "이 호에는 전기식 중앙난방 보일러를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전기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것은 제84류와 제85류를 구분하는 기준이 아니다.

필자의 견해로는 예외적인 것은 있으나 제84류와 제85류 제품을 구별할 수 있는 기준으로는 ① 전기의 특성이나 효과[예 : 전기저항(도체, 부도체, 반도체), 전기에너지의 변환(빛, 소리, 열, 자력, 전파 등), 전기의 발생·이동·저장·소멸(발전기, 전기회로, 전지)를 이용하는 것과 가정용 전기기기는 제85류에 분류하고, ② 전기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전기기계식의 기기와 가정용이라 할지라도 발명 초기부터 산업용으로 개발된 기기(예 : 냉장고와 냉동고, 접시세척기, 세탁기, 계산기, 컴퓨터, 에어컨, 선풍기 등)는 제84류로 분류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 전기식 중앙난방보일러에 대한 WCO 분류 사례 ●

결정 세번 제8403.10호

품명 전기식 중앙난방보일러

물품 설명

강(鋼)제의 것으로서, 난방 목적으로 각종 온도의 온수를 만들어내는 데 사용된다(밑에 장치하는 형식의 것 또는 방열기 가열식의 것). 이들 보일러는 단단한 폴리우레탄 폼[polyurethane foam : 폴리우레탄을 골격으로 하는 발포체(發泡體)]으로 절연돼 있으며, 220볼트 또는 380볼트의 전압으로 작동한다. 상기 보일러는 다음과 같은 장치, 즉, 제거 가능한 스테인레스 강제의 투입식 가열기, 전력용 및 제어용 계전기, 온도자동조절기기·온도계·스위치를 포함하는 제어반, 가변속도 순환펌프, 유체압력계(hydromanometer), 안전밸브, 열 배출구 및 리턴장치, 확장실(expansion chamber)(갖추고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음), 가정용 온수탱크 연결용 배출구 및 리턴 장치를 갖추고 있다. 전력(조절가능함)은 모델에 따라 5.6KW에서 24KW까지 또는 28.8KW에서 259.2KW까지 변화한다.

최고 온도는 섭씨 90도이며 작동 압력은 3바이다.

4) 제8403호와 경합되는 그 밖의 물품들은?

제7321호의 용어에 ‘철강으로 만든 스토브(stove)·레인지(range)·불판·조리기(중앙난방용 보조보일러를 갖춘 것을 포함한다)’를 규정하고 있다.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중앙난방용 보조 보일러를 갖춘 스토브를 분류한다”고 해설하고 있다.

제8403호 호의 구성에서 설명했듯이 비기계식의 스토브와 같은 난방기구는 제8403호에서 제외한다. 제7321호의 물품과 제8403호의 물품이 결합돼 제시되는 물품의 경우(예 : 보조보일러를 갖춘 스토브)에는 통칙 제3호 나목을 적용해 본질적 특성에 따라 분류한다. 해설서에 예시한 물품은 보일러를 보조적인 것으로 봤기 때문으로 보일러가 본질적 특성을 갖는 경우에는 당연히 제8403호로 분류해야 한다.

제7322호의 용어에 ‘철강으로 만든 방열기(중앙난방용으로 한정한다)와 온풍배분기’를 규정하고 있다.

중앙난방용 방열기는 난방을 위해 열을 방출하는 역할을 하고 온풍배분기는 중앙난방식 보일러에 접속할 수 있게 제작된다. 이들은 보통 별도로 제시되며 제8403호의 부분품이나 제8404호의 부속기기로 분류하지 않고 제7322호로 분류한다.

제8403호의 보일러는 사용 연료나 외관으로 대동소이하므로 제8402호의 보일러처럼 제8416호 ‘노(爐)용 버너’, 제8419호 ‘온도 변화에 따른 방법으로 재료를 처리하는 기계·설비’, 제8481호 ‘증기나 온수용 탭과 콕’, 제8516호 ‘전기식의 즉시식·저장식 물 가열기와 투입식 가열기, 난방기기’와 경합이 되므로 유의한다.

※ 이 글에서 제기한 의견 등은 필자가 소속한 기관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편물제 장갑

이 영 주 | 중앙관세분석소

장갑은 여러 가지 용도로 손에 끼우는 의류의 한 종류다. 스포츠용, 패션용, 작업용 등 목적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장갑을 사용한다.

병원을 방문하면 의사들이 의료용 장갑을 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지금은 수술 등에 널리 사용되는 이 장갑이 사실은 ‘의료용’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고 한다. 19세기 말 윌리엄 할스테드라는 천재 외과 의사가 있었는데, 워낙 천재였던터라 다른 의사들이 실패하는 수술도 어려움 없이 성공할 정도였다.

하지만 할스테드 박사에게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다. 바로 완벽주의자적 성향이라는 점이다. 어찌나 완벽주의 성향이 심한지 그 당시 마취제로 사용되던 코카인이 마취가 얼마나 잘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자신에게 실험하다 코카인에 중독될 정도였다. 당연히 이 완벽주의 성향은 제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쳤고 완벽한 수술을 위해 자신뿐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가혹할 정도로 수술 전 손씻기를 강요했다고 한다.

그러다 병동에 햄프턴이라는 유능한 신입 간호사가 들어왔다. 햄프턴을 본 할스테드 박사는 단번에 사랑에 빠져버렸다. 하지만 얼마 후 햄프턴이 갑자기 사직서를 제출했고 할스테드 박사는 왜 사직하려 하는지 전전긍긍하던 그때 마침내 그 이유를 알아냈다. 바로 수술 전 매번 손을 옥살산과 염화수은에 담가대니 피부가 벗겨지고 손이 너무 아팠기 때문이었다.

결국 그는 햄프턴의 손과 팔뚝을 석고 모형으로 본떠 뉴욕에 있는 굿이어 고무회사에 보냈다. 그렇게 생산된 장갑은 매우 얇아서 수술 봉합용 실과 같은 미세한 물체의 질감까지 느낄 수 있었고 증기로 살균할 수 있을 정도로 탄성이 있었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햄프턴이라는 간호사와 결혼했다고 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수술용 장갑은 전 세계 의료계에 퍼지게 됐고 많은 사람의 목숨을 살리고 있다.

[세번 정정 이유] 본 물품은 분홍색계 손가락 분리형 편물제 장갑 한 쌍을 소매포장한 것으로 ‘장갑류’인 제6116.92-9000호로 신고했다.

외부는 편물이며 장갑 내부에는 백색 반투명한 겔 물질(플라스틱)이 코팅돼 보습제를 바르고 장갑을 착용하면 손에 보습 효과를 주는 제품이다.

본 물품의 주요 논지는 내부에 코팅된 겔이 기초 화장품의 역할을 하는지였다.

「화장품법」에 따른 화장품의 정의는 “인체를 청결·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하여 인체에 바르고 문지르거나 뿌리는 등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을 의미한다.

해당 제품의 경우 장갑의 형태로 손을 보호하는 역할이 주요하며, 내부에 코팅된 겔의 경우 단순 손·발의 수분 손실을 물리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므로 「화장품법」에 따른 화장품에 해당하지 않았다.

관세율표 제6116호에는 ‘장갑류(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116.10호에 ‘플라스틱이나 고무를 침투시키거나 도포하거나 피복한 것’을 세분류하고 있다.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여성용이나 소녀용과 남성용이나 소년용 장갑인지에 상관없이 모든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의 장갑(gloves)을 분류한다. 이 호에는 보통 손가락이 분리된 짧은 장갑·손가락 부분만을 덮는 장갑·엄지손가락만 분리한 장갑·아래팔이나 위팔까지 덮는 긴 장갑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본 물품은 편물 형태의 장갑 내부에 겔상의 플라스틱을 도포한 것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6116.10-0000호에 분류했다.

신고품명	신고세번(세율)	회보품명	정정세번(세율)
GLOVES OF COTTON	6116.92-9000 (FCN1 0%)	Knitted gloves, coated with plastics	6116.10-0000 (FCN1 2.6%)

소화기의 변신

박 현 수 | 관세법인 부일(관세사)

소화기란 연소의 세 가지 요소, 즉 가연물, 산소를 함유하는 공기, 발화 원인인 열과 같은 요소 중 하나 이상을 제거해 불을 끄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을 제거하는 방식에 따라 소화의 종류도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일반적으로 ABC 등 소화기로 분류할 수 있는데 여기서 A급 보통 소화기란 연소 후 재를 남기는 나무, 종이, 섬유 등의 가연물 화재에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의미한다. 물을 함유한 용액을 사용해 냉각·질식 방식으로 소화가 이뤄진다. 다음 B급 소화기란 연소 후 재를 남기지 않는 유류, 가스 등의 가연성 액체나 기체 화재에 사용되는 제품이다. 이때는 포말, 분말 형태의 약제를 사용해 산소를 차단하는 방식으로 소화 과정이 이뤄진다.

C급 소화기란 전기와 관련된 전선로 화재 등의 전기 화재를 의미하는데, 전기적 절연성을 갖는 CO₂, 분말 등의 소화약제를 이용해 질식·냉각·억제 방식으로 소화되는 것이다. D급 소화기란 리튬, 마그네슘, 칼륨 등 금속물질에 의해 발생하는 화재에 사용될 수 있는 소화기를 말한다. 전기차 등 리튬 배터리 시장이 급증하는 현실을 고려하면 D급 소화기가 해당 장소에 충분히 비치돼야 할 것이다.

요즘에는 소화기도 변신을 꾀하고 있다. 소비자들의 관심을 끄는 소화기 제품들이 출시되고 있는 것. 단순하지만 강렬한 컬러로 소비자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는 제품이 출시되는가 하면, 독특한 디자인, 의미까지 새겨서 제품화되고, 와인병이라고 해도 믿을 수 있는 외관의 소화기가 유통되기도 한다. 단 이들 제품이 사용자들에게 긴급상황에 소화기란 용도로 사용된다는 확신을 주도록 해야 할 것이다.

관세율표에서 소화기는 일반적으로 제8424호 ‘액체나 가루의 분사용·살포용·분무용 기기, 소화기, 스프레이건과 이와 유사한 기기, 증기나 모래의 분사기와 이와 유사한 제트분사기’에 분류된다.

단 투척용 소화탄은 제3813호 ‘소화기용의 조제품과 장전물, 장전된 소화탄’에 분류된다. 제 3813호 호 해설서에는 “(A) 소화기용 조제품, (B) 소화기용 장전물, (C) 장전된 소화탄” 등이 예시로 설명되고 있다.

논문모집

발행 일정

구분	학술지 발행일	논문 투고 마감일
제1호 (3월)	3월 31일	1월 31일
제2호 (6월)	6월 30일	4월 30일
제3호 (9월)	9월 30일	7월 31일
제4호 (12월)	12월 31일	10월 31일

※ 논문 게재를 원하는 연구자는 각 호별 논문투고 마감일까지 논문 투고

(사)한국관세무역개발원에서는 관세행정 및 무역 정책 수립·발전에 기여할 연구 활동을 장려하고 관세·무역 학술활동 진흥을 도모하고자 학술지 「관세무역연구(Korea Customs Review)」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학술지에 게재할 논문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투고 바랍니다.

※ 본 학술지는 연구 장려를 위해 투고료와 심사료를 받지 않으며, 게재가 확정된 논문에 대해서는 소정의 연구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투고 방법

이메일 송부 (kcr@kctdi.or.kr)

* (사)한국관세무역개발원
홈페이지(www.kctdi.or.kr) 참조

원고 분량

20매 내외

제출 자료

- ① 논문 원고
- ② 논문투고 신청서
- ③ 연구 윤리 확인서

투고 자격

관련 전문가(학계·연구·실무자) 및 대학원생

논문 주제

- 관세행정 및 제도 관련 연구 분야
(통관, 심사, 조사, 국제협력, 정보데이터 등)
- 무역 관련 이론·정책 등 연구 분야
(무역실무, 무역이론, 국제경영 등)

연구지원금

편 당 **200만원**
(게재가 확정된 논문에 한함)

문의처

연구본부 연구실
Tel 02-3416-5168



주간 관세무역정보 통권 제2104호_2024.10.28.

최신개정법령

입법예고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

본 내용은 www.custra.com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입법예고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 제2024-224호, 2024.10.23.)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 이유

-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4년 10월 31일까지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되 킬로그램당 212원으로 인하폭을 축소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2024년 1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탄력세율을 킬로그램당 212원으로 적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환경에너지세제과, 전화 (044)215-4331 팩스 (044)215-8069, 이메일 ja9595@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 전자우편 : ja9595@korea.kr
- 팩스 : 044-215-806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전화 044-215-4331, 팩스044-215-80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 제2024-225호, 2024.10.23.)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 이유

-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및 경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의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4년 10월 31일까지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되,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탄력세율은 리터당 450원으로, 경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탄력세율은 리터당 289원으로 각각 인하폭을 축소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2024년 1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탄력세율을 리터당 450원으로, 경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탄력세율을 리터당 289원으로 적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환경에너지세제과, 전화 (044)215-4331 팩스 (044)215-8069, 이메일 ja9595@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 전자우편 : ja9595@korea.kr
- 팩스 : 044-215-806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전화 044-215-4331, 팩스044-215-80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공고 제2024-1043호, 2024.10.18.)

「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 이유

- 항만기술산업은 공급망 거점인 항만 구성·운영의 필수 요소로써 물류비 절감, 경제 안보 등과 직결되는 기간 산업이나, 미국·중국 등 항만선진국 또는 국내 타 신산업 대비 관련 제도적 장치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0135호, 2024.1.23. 공포)됨에 따라 항만기술산업의 기술개발 및 상용화 촉진,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가. 항만장비(안 제2조) 항만장비를 항만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른 시설장비 및 이와 관련하여 사람의 개입이 전혀 없거나 최소한의 개입 하에 작동이 가능한 자율작동 시설장비로 규정
- 나. 표준화 추진(안 제3조) 표준화 사업 시 관계자들로 구성된 협의체 구성, 필요 시 자료 제출 등 협조 요청, 표준 제정·개정·폐지 및 관련 조사·연구·개발한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가능, 표준화 촉진을 위한 표준 사용 권고 등을 규정
- 다.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안 제4조)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시 지정신청서 및 필요 서류와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서식을 명시
- 라. 전문기관의 지정 등(안 제5조) 전문기관 지정 시 지정신청서 및 필요 서류와 전문기관 지정서 서식을 명시
- 마. 사업자단체의 사업추진(안 제6조) 법 제16조에 따른 사업자단체가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 확대
- 바. 사업자단체의 정관 및 지도·감독 등(안 제7조) 사업자단체의 설립인가, 정관의 변경 및 지도·감독 등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 행정규칙을 준용토록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항만개발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이유
-----	-----	------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 일반우편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6동 해양수산부 항만국 항만개발과
- 전자우편 : runyj@korea.kr
- 팩스 : 044-200-594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항만개발과(전화 044-200-5941, 팩스 044-200-59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규 발간도서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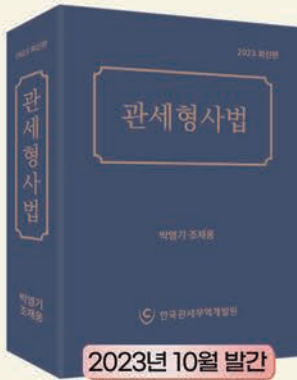
HS품목별 수출입통관편람 (2024년 신간)

FTA 및 WTO 등 관련 세율과 통합공고 및 기타 고시 등
수출입 통관에 필요한 정보를 단 한 권에!

10% ~~120,000원~~ **온라인 구매 108,000원**



2024년 1월 발간



관세형사법(2023년 개정판)

정확한 법집행과 적법절차 준수를 향한 지침서

관세/무역/외환형사분야의 복잡한 법리와 실무 정립,
중요 판례와 조사 사례를 이해하기 쉽게 소개

10% ~~60,000원~~ **온라인 구매 54,000원**

2023년 10월 발간

관세환급실무(2023년 개정판)

물품의 신속통관과 관세환급제도의 중요성

물류비용 절감과 수출물품의 가격경쟁력 제고

개정 서식 반영 및 사례와 그림으로 엮어 바로 실무에 활용

10% ~~50,000원~~ **온라인 구매 45,000원**



2023년 10월 발간

※ 상기 도서의 이미지는 실제 이미지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10%

발간 예정 도서 사전 예약 할인!

Special
price!

구매 문의 02)3416-5112 **온라인 구매** smartstore.naver.com/kctdi

2024 (개정판) 관세법령집

관세/무역 관련 법령 총 망라,
관세 행정 업무는 이 한권으로!



발간기념
10% 할인

60,000 원 ➡ 54,000 원

1

최신 기준 반영

관세/무역 관련 법령
2024년 4월 1일 기준
수록

2

변경 법령 반영

새로 제정된 덤핑/상계관세
세부운영규정 고시 반영
24년 관련법 개정이유
수록

3

쉽고 편한 법령 참조

관세법 등 최신 판례 및
고시명 업데이트
(판례 8개, 고시명 66개 등
총 74개 변경)



도서구매 문의 및 온라인 구매처

Tel : 02)3416-5112 / Fax : 02)3442-2840

커스트라 : www.custra.com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 smartstore.naver.com/kctdi



한국관세무역개발원

Korea Customs and Trade Development Institute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도서 판매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